

#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2012. 12

장동식 · 김경환



## 머 리 말

선진 보험회사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화, 겸업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선진 보험회사들은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변동성에 취약한 자산에 투자하였다.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위험 중심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유럽 연합은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안)인 솔벤시 II를 도입하여 위험 중심 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비회원국 감독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을 통해 솔벤시 II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연합 외 감독당국들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위험 중심 자기자본제도(1층) 및 위험 중심 감독(2층)에 집중하여 솔벤시 II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감독당국은 보고 및 공시(3층)에 대한 고찰로 솔벤시 II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니즈에 부응하여 솔벤시 II의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 내 상시감독을 위한 보고제도와 시장규율 기능을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리스크 중심 경영 및 리스크 중심 감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대식



# ■ 목차

---

## 요약 / 1

### I. 서론 / 13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3
2. 조사 범위 및 방법 / 15

### II. 솔벤시 II의 배경 및 추진경과 / 18

1. 솔벤시 II의 배경 / 18
2. 솔벤시 II의 주요 특징 / 21
3. 솔벤시 II 진행경과(3층 중심) / 26

### III. 솔벤시 II의 보고·공시 체계 / 31

1. 보고·공시 체계와 EIOPA의 검토방향 / 31
2. 보고·공시의 원칙, 주기 및 작성방법 / 39
3. 보고·공시의 구조 / 46
4. 기타 / 53

### IV.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요건 / 56

1.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 56
2.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산·부채 평가 / 75
3. 자본관리 및 내부모형 / 88
4. 양적 양식(quantitative templates) / 100

### V. 요약 및 시사점 / 102

1. 요약 / 102
2. 시사점 / 107

## | 참고문헌 | / 112

## ■ 목차

---

| 부록 | / 117

부 록 I : 보험회사 보고 및 공시 / 117

부 록 II : 국제기구와 공시제도 / 131

## ■ 표 차례

---

- 〈표 I-1〉 재무정보 이용자와 시장규율 / 16
- 〈표 II-1〉 솔벤시 II의 기본 체계 / 24
- 〈표 II-2〉 EIOPA의 보고·공시 관련 주요 보고서 / 27
- 〈표 II-3〉 EU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 주요 내용 / 29
- 〈표 II-4〉 보험회사 결산지침의 회사법 제4지침(78/660/EEC) 준용 / 30
- 〈표 III-1〉 EIOPA의 검토 방향 / 34
- 〈표 III-2〉 솔벤시 II의 보고·공시 원칙 / 40
- 〈표 III-3〉 솔벤시 II의 정기보고·정기공시 주기 및 제출기한 / 45
- 〈표 III-4〉 정기보고·정기공시의 구조 / 47
- 〈표 III-5〉 솔벤시 II, 바젤 II 및 IAIS의 보고 항목 / 48
- 〈표 III-6〉 솔벤시 II의 보고·공시와 현행 보고 간 차이(영국) / 49
- 〈표 III-7〉 솔벤시 II, 바젤 II 및 IAIS 등의 정기공시 항목 / 52
- 〈표 III-8〉 보험회사 정기공시 관련 유럽 지침 주요 내용 / 53
- 〈표 III-9〉 솔벤시 II의 수시보고·수시공시 요건 / 54
- 〈표 III-10〉 솔벤시 II의 3층(보고·공시)과 외부감사 요건 / 55
- 〈표 IV-1〉 경영성과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 61
- 〈표 IV-2〉 솔벤시 II의 보고·공시와 영국 간 비교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시스템 기준) / 63
- 〈표 IV-3〉 지배구조 관련 공시 요건 및 보고 요건 비교 / 74
- 〈표 IV-4〉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 81
- 〈표 IV-5〉 솔벤시 II의 정기공시와 국제회계기준의 재무공시 비교 / 82
- 〈표 IV-6〉 자산 및 부채 평가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 87
- 〈표 IV-7〉 자본관리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 93
- 〈표 IV-8〉 내부모형 관련 공시 요건 및 보고 요건 비교 / 100
- 〈표 IV-9〉 양적 보고 양식과 양적 공시 양식의 비교 / 101

## ■ 그림 차례

---

- 〈그림 Ⅱ-1〉 글로벌 기준 선도 국가·국제기구와 감독당국 간 관계 / 20
- 〈그림 Ⅱ-2〉 솔벤시 Ⅱ의 목적 및 주요 특징 / 22
- 〈그림 Ⅱ-3〉 기업분석의 틀 / 25
- 〈그림 Ⅲ-1〉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체계 / 32
- 〈그림 Ⅳ-1〉 보험회사의 공시 수준, 공시 모범사례 및 공시 감독기준 / 83

## **A study of the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under Solvency II**

Until recently insurance companies drive globalization and convergency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fierce market competition. And Insurance companies have developed new financial products to cover the diverse and complex risks.

The change make problems the supervision system. Then insurance regulators make a strive of developing the risk based supervision system, and conduct insurance companies to improving financial risk measurement models and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 order to strength the risk based supervision the European Union make an effort to introduce a single European insurance supervision system Solvency II. The effort will affec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or non-member countrie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benchmarks the Solvency II as part of SMI.

But Many regulators focus part of Solvency II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insurance company. Those regulators, therefore, need to be complemented by reviewing the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of Solvency II.

This study intends to help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ose insurance companies that plan to improve a disclosure system by providing the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 that EIOPA propose to facilitate convergence between Member States to the appropriate extent. We hope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business abroad to Korean insurance companies and help them succeed in do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 요약

### I. 서론

- 감독당국들은 감독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솔벤시 II의 1층과 2층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
  - 국제기구 및 감독당국들은 솔벤시 II를 검토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1층(요구자본)과 2층(리스크관리 및 감독당국의 점검)에 집중함.
  - 이는 솔벤시 II의 3층을 이해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솔벤시 II의 3층(보고 및 공시)에 대한 벤치마킹은 솔벤시 II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더 나아가 솔벤시 II의 3층에 대한 검토는 감독당국에게 상시감독 및 시장규율과 관련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II. 솔벤시 II의 배경 및 추진경과

- 솔벤시 II는 보험산업의 발전, 리스크관리, 금융기법, 국제 재무보고 및 건전성 기준 등을 참작하여 새로운 보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임.
  - 선진 보험회사는 글로벌화 및 겸업화 전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공학을 적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재무리스크 측정 모형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등을 경영에 활용하는 리스크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음.
  - 감독당국들은 재무건전성 등을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솔벤시 II는 은행의 바젤 II와 달리 3층에 보고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3층은 감독당국이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아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사업 이해, 재무실적 및 회계정책의 분석, 미래예측과 가치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솔벤시 II의 3층과 관련하여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최종 권고안을 2013년 봄에 유럽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 솔벤시 II 지침 중 보고 및 공시 관련 규정은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검토 보고서(2006 및 2007)를 토대로 2009년에 제정됨.
  - 보고 및 공시 관련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2009년과 2011년에 공표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권고안을 토대로 2013년에 마련될 예정임.

### III.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

- 솔벤시 II의 3층은 정기보고, 정기공시,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로 이루어짐.
  - 정기보고는 보험회사가 상시감독 및 재무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이고, 정기공시는 보험회사가 시장참여자의 시장규율 기능을 위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임.
  -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는 사전 설정한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이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공시하는 제도임.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3층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하에 지침에서 보고 및 공시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보고의 질 강화, 규제차익 및 처리 불균형의 회피 등을,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 및 시장규율 강화를 검토방향

으로 설정함.

- IAIS 및 BIS처럼 적시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접근성 및 포괄성을 보고·공시 원칙으로 설정함.

■ 솔벤시 II 3층하에서 보험회사는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질적, 양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의 경우 보고 주기는 감독정도와 연계(최소 3년)하여야 하며, 정기공시의 경우 공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이어야 함.
- 한편, IAIS 및 BIS는 보고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공시주기에 대해서는 IAIS는 연 1회 이상으로, BIS는 반기로 정하고 있음.<sup>1)</sup>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연 1회, 업무보고서를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공시 보고서를 매 분기 공시하여야 함.

■ 그리고 보험회사는 동일 구조 및 유사한 항목으로 질적, 양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와 정기공시는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보고 양식 등의 구조로 설계됨.
- 그렇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정기보고와 정기공시 간에 큰 차이가 있음.
  - 정기보고는 정기공시와 달리 미래지향적 관점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기밀정보도 포함하여야 함.
- 솔벤시 II는 BIS, IAIS 및 우리나라와 달리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구조 및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1) 대형은행은 자기자본 내역을 분기기준으로, 리스크 익스포져 정보나 다른 항목이 급변하는 은행은 관련 정보를 분기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함.

#### IV.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요건

- (경영성과) 솔벤시 II의 경우 보험회사는 <요약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비즈니스·외부 환경, 영업성과 및 영업외성과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와 달리 목적 및 전략, 비즈니스 계획 기간 내 경영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 경영성과의 경우 내부분석, 계획 대비 성과 등을 보고하여야 함.
  - 경영성과 항목은 재무회계기준 실무서인 경영진설명서 항목과 대부분 일치함.

<요약 표 1> 경영성과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경영일반 및 외부환경	비즈니스 및 외부 환경 특징(계획 기간 내, 장래 추세 및 요인 포함)	회사 일반 정보, 비즈니스/외부 환경 특징, 중요 사건(당년도)
목적 및 전략	재무적/비재무적 목적, 경영전략/리스크전략, 전략 변화, 계획 기간	-
보험영업성과	보험종목별/지역별 성과(내부 분석, 계획 대비 성과, 장래 중요 요인 등)	보험종목별/지역별 성과(전년도와 비교), 그룹 내부 거래
투자영업성과	투자자산그룹별 성과(내부 분석), 투자영업비용, 주요 가정	투자자산별 성과, 유가증권 손익, 자산 상각 및 손상 등
영업외성과	내부 분석, 장래 영업의 수익 및 비용 (예: 구조조정 및 운영비용)	수익 및 비용별 구분, 중개활동 및 기타 보험외 활동 등의 손익

- (지배구조) 보험회사는 <요약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지배구조, 적격성, 리스크관리시스템, ORSA, 내부통제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서는 지배구조를 정기공시보다 상세히 서술하여야 함.
    - 정기보고는 지배구조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계성 입증, 주주와의 거래 및 내부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 ORSA에서 결과, 현재/미래 익스포져, 결과 비교, 표준모형 미반영 리스크, 전략 반영 방법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 영국의 “영업과 재무검토 보고서” 및 “지배구조 규범”과 비교하여 ORSA, 내부모형, 아웃 소싱 등을 추가로 서술하여야 함.
  -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와 비교하여 ORSA 및 내부모형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 서술하고, 또한 지배구조 전반, 리스크관리시스템 전반, 핵심 및 중요 기능·활동에 대한 아웃소싱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야 함.

〈요약 표 2〉 지배구조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지배구조 일반	지배구조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계성 입증 등 추가 보고	지배구조 개요 및 급여정책(원칙, 보수 결정 요인, 평가기준)
적격성	적격성 정책과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 최소 자격 요건
리스크관리 시스템	시스템 정보(리스크별 목적 및 정책, 의사결정 정보 등)	시스템 개요, 리스크 전략/정책 개요, 표준모형 미포함 리스크 관리, 내부보고 범위/빈도/요건
ORSA	ORSA 세부 정보(결과, 현재/미래 익스포져, 결과 비교, 표준모형 미반영 리스크 등)	프로세스, 통합방법, 정기검토 여부, 승인여부, 지급여력 니즈 결정 방법, 문서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정보(기록 유지 및 보안, 보고 계획, 비상계획, 준법)	시스템 개요, 판단이유, 관리·결산 절차, 위임전결 처리방법, 준법기능, 데이터 질 확보 방법
내부감사기능	내부전략 준수 모니터 방법, 감사 계획, 감사결과 및 감사조치	활동 사항, 독립성/객관성 유지 방법
계리기능	보다 상세한 정보	적용 범위, 이행 방법, 객관성/독립성 유지 방법
아웃소싱	관리 및 안전장치, 비상 계획 내 고려 대상, 서비스 제공자 능력	아웃 소싱 개요 및 이유

■ (리스크 프로파일) 보험회사는 〈요약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크 범주별로 리스크 익스포져·집중·경감·민감도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정기공시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여야 함.
  - 정기보고는 비즈니스 전략에 따른 진전, 새로운 리스크 인지 프로세스,

익스포저 관리 방법 등을 리스크 익스포저에서 서술하여야 함.

- 장래 리스크 집중을 리스크 집중에서, 전략 및 모니터 프로세스, 경감 방법 및 효과 등을 리스크 경감에서 서술하여야 함.
- 솔벤시 II는 국제회계기준(IFRS 7 및 IFRS 4)과 달리 운영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 ALM 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여야 함.
  - 우리나라보다 넓은 대상에 리스크 집중, 민감도 분석 등을 적용함.
  - 또한 비계량화 리스크 관리 개요, 익스포저 특징 및 과거 경험, 익스포저 결정요인의 변화 및 지급여력 포지션 영향 등도 서술하여야 함.

〈요약 표 3〉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보험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별 익스포저, 집중, 경감, 민감도: 보다 상세 서술(장래 리스크 포함)</li> <li>• 추가 보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스포저: 비즈니스 전략에 따른 진전, 새로운 리스크 인지 프로세스, 익스포저 관리 방법 등</li> <li>- 집중: 장래 리스크 집중</li> <li>- 경감: 전략 및 모니터 프로세스, 경감방법 및 효과, 경감정책 및 실행방법</li> <li>- 민감도: 세부 정보, 미공시 이유, 모니터 방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별 익스포저, 집중, 경감, 민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스포저: 평가방법 특징, 비계량화 리스크 관리 개요, 익스포저 특징 및 과거 경험, 익스포저 결정요인의 변화 및 지급여력 포지션 영향 등</li> <li>- 집중: 유형, 현황, 양적 정보 산출방법 및 가정, 보험리스크 집중 현황</li> <li>- 경감: 방법, 효과 모니터 절차, 활용 여부 및 사용 방법</li> <li>- 민감도: 분석 방법 및 제 가정, 변경사항, 변경이유</li> </ul> </li> <li>• 시장리스크: 선관주의 적용방법</li> <li>•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만기분석 등)</li> <li>• 기타리스크: 파생상품관련 주요 리스크, 부외거래 관련리스크</li> </ul>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기타 리스크		

- (자산 및 부채 평가) 보험회사는 〈요약 표 4〉와 같은 내용으로 자산, 책임준비금, 기타 부채 등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서는 기밀정보 및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도 서술함.
  - 국제회계기준(IFRS 7 및 IFRS 4)과 달리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선관주의를 적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요약 표 4〉 자산 및 부채 평가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 및 방법</li> <li>• 기밀 정보 포함</li> <li>•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평가 기준·방법·가정 차이</li> <li>• 구조화 상품 개요, 지급여력 목적 평가 기준 및 방법</li> <li>• 금융상품 경제적 가치 결정방법</li> <li>•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 방법 및 제 가정 평가방법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li> </ul>
책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준비금 규모, 종목별 리스크별 측정방법 및 제 가정, 단순방법 적용이유, 책임준비금 변화 등</li> </ul>
기타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기준 및 제 가정, 평가 기준·방법·가정 차이 (감독회계와 재무회계, 양적/질적)</li> </ul>

- (자본관리) 보험회사는 〈요약 표 5〉와 같은 내용으로 자본의 구조·규모·질, 요구자본,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와 달리 비상계획 관련 가용자본 수준, 계획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 등도 서술하여야 함.
    - 가용자본의 구조 및 비상계획 관련 가용자본의 수준, 계획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 리스크 경감 방법 및 관리 행위 등을 서술하여야 함.
  - 솔벤시 II는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장래 자본 수준 및 확충 계획 관련 질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함.
    - 우리나라와 달리 장래 자본 수준 및 확충 계획 관련 정보, 요구자본 요건 위반과 관련한 대응계획, 대응효과 등을 서술하여야 함.

〈요약 표 5〉 자본관리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가용자본의 구조, 양 및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용자본의 구조 (기간 및 조건 포함)</li> <li>비상계획 하 가용자본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용자본 관리 목적, 정책, 프로세스, 구조, 자기자본 종류별 양 및 질</li> <li>신종자본증권의 양적 및 질적 기준 충족 방법</li> <li>보완자본별 규모, 특성, 결정방법</li> <li>보고일 이후 자기자본 변화 등</li> </ul>
요구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li> <li>리스크 경감 방법 및 관리 행위, 승인요건 충족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크별 질적 정보, 적용모형, 경험 실적 사용 모듈 및 사용 이유, 보고일 이후 요구자본 수준 변화 이유 등</li> </ul>
보험회사의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옵션 선택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리스크 모듈 계상방법</li> </ul>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모형 요구자본 추정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가정의 차이(변경 정당성 포함)</li> </ul>
요구자본 요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공시 사항 협의 내용</li> <li>요건 충족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인, 결과, 대응계획</li> <li>요구자본 요건 위반 규모</li> <li>대응수단의 효과 및 영구성</li> </ul>

■ (내부모형) 보험회사는 〈요약 표 6〉과 같은 내용으로 내부모형의 질적 정보 및 양적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정기보고에서는 내부모형 관련 질적 및 양적 정보를 정기공시보다 상세히 서술하여야 함.

- 내부모형 요건 준수 행위, 직전연도와 비교·조정, 손익 설명, 리스크 프로파일과 내부모형 간 가정 차이 등의 질적 정보를,
- 내부모형 요구자본, 표준모형 요구자본 추정치, 책임준비금 및 이연법인세의 손실흡수능력 등의 양적 정보를 상세히 서술하여야 함.

〈요약 표 6〉 내부모형 관련 공시 요건 및 보고 요건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내부모형 질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준수 행위, 직전연도와 비교 · 조정, 손익 설명, 리스크 프로파일과 내부모형 간 가정 차이, 개선계획, 자본 조정, 자본배분, 장래경영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활용, 범위 및 적용대상, 리스크 측정수단/신뢰수준/평가기간/기본자본, 계상방법, 데이터의 질, 리스크 경감행위, 운영성과, 검증행위, 문서화</li> </ul>
내부모형 양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모형 요구자본, 표준모형 요구자본 추정치, 책임준비금 및 이연법인세의 손실흡수능력, 자본확충, 직전연도와의 비교 ·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자본, 직전연도와의 비교 및 조정, 검증 분석</li> </ul>

- (양적 양식) 보험회사는 정기보고의 경우 모든 양적 양식을 보고하고, 정기공시의 경우에는 일부 양식만을 공시함.
  - 정기보고는 재무상태표, 경영활동, 가용자본, 요구자본, 자산, 책임준비금, 재보험 등과 관련한 모든 양식을 포함함.
  - 반면에 정기공시는 대차대조표, 보험료 · 보험금 · 비용, 가용자본, 총 요구자본, 최저요구자본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일부 양식만을 포함함.
  - 이 양식들은 국가 간 및 회사 간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서식으로 설계됨.
  - 양식 중 일부(예: 요구자본, 책임준비금, 보험료 및 보험금, 가용자본 등)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함.

## V.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솔벤시 II는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모두를 투명성 강화 제도로 분류함.
  - 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감독 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3층

에서 보고제도에 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BIS(바젤 Ⅱ)는 솔벤시 Ⅱ와 달리 공시제도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고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솔벤시 Ⅱ는 보고 및 공시의 원칙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음.

- 솔벤시 Ⅱ는 적시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접근성, 포괄성 등을 보고 및 공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IAIS 및 BIS의 공시 원칙과 대부분 일치함.
- 한편, 우리나라는 보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시의 원칙도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 솔벤시 Ⅱ는 보고제도와 공시제도의 구조 및 요건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권고함.

- 정기보고와 정기공시에서 구조와 항목을 유사하게 권고하면서도 이용자와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
  - 이는 감독당국 등이 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데이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보고와 공시제도 특히, 양적 서식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 및 요건들을 설계하고 있지만,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솔벤시 Ⅱ는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 및 공시에 적용하고 있음.

- 솔벤시 Ⅱ는 새롭게 도입한 ORSA 및 내부모형과 관련된 내용, 변경된 요구자본 산출 내용 등을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보고 및 공시 수준을 상향시킴.
  - 예를 들어 최근 재무회계기준의 경영진설명서를 보고 및 공시 항목에 포함시킴.

-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본관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4, IFRS 7 및 IAS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서술하여야 함.
- 한편, 솔벤시 II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예: ORSA 및 내부모형) 등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음.

## 2. 시사점

- 감독당국은 보고 및 공시의 구조 및 요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솔벤시 II는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관점에서 보고 및 공시의 구조 요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 이는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해를 제고하고, 아울러 제도의 이행을 보다 쉽게 견인할 수 있음.
-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은 보고제도와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솔벤시 II는 BIS와 달리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구조 및 요건들을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아울러 솔벤시 II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보고 및 공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솔벤시 II는 영국 및 독일 등에서 상장회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영진설명서를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보고 및 공시 원칙, 미공시 사항 공시 등을 공시제도에 반영하여 국제적 정합성, 원칙 중심 감독 및 시장규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솔벤시 II는 IAIS 및 바젤 II의 공시원칙과 유사한 원칙을 보고제도 및 공

시제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 중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을 강조함.
- 미공시 사실과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규율의 기능을 제고함.
-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공시 사실 및 미공시 이유를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솔벤시 II의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 등의 논의 및 검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등은 2013년 솔벤시 II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 확정, 2014년 솔벤시 II 지침 시행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당국들은 유럽보험연금감독청등이 확정하고자 하는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은 ORSA 및 내부모형 등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I. 서론

---

## 1. 조사 배경 및 목적

감독당국들은 솔벤시 II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보험감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작업”(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이하 SMI)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솔벤시 II를 벤치마킹하였다.<sup>2)</sup>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이하 RBC 제도)로 전환한 과정에서 솔벤시 II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내부모형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솔벤시 II를 벤치마킹하였다.

감독당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솔벤시 II는 3층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솔벤시 II의 1층은 자기자본의 양적 요건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의 바젤 II의 1층 및 우리나라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와 유사하다. 솔벤시 II의 2층은 자기자본의 질적 요건 및 감독 요건에 해당되며, 이는 바젤 II의 2층 및 우리나라의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이하 RAAS)와 유사하다.<sup>3)</sup> 마지막으로 솔벤시 II의 3층은 공시 요건과 함께 보고 요건을 3층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솔벤시 II가 은행의 바젤 II와 달리 모든 보험회사 관련 감독 제도를 포괄하는 유럽 단일 보험감독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솔벤

---

2) SMI는 지배구조, 그룹 재무건전성, 국제회계, 원칙중심 준비금, 지급여력 근대화, 재보험 등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NAIC 홈페이지 <http://www.naic.org> 참조).

3)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CAMEL)와 리스크평가(RAAS)를 새로운 건전성평가제도(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로 통합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예고”(2012. 7. 9) 참조).

시 Ⅱ는 모든 감독 제도를 포괄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솔벤시 Ⅱ는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3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솔벤시 Ⅱ가 3층 체계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들은 벤치마킹을 1층 및 2층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들이 재무건전성 감독행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솔벤시 Ⅱ의 1층 및 2층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솔벤시 Ⅱ의 3층에 대한 벤치마킹은 감독당국들이 솔벤시 Ⅱ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솔벤시 Ⅱ에서 채택하고 보고제도를 통해 상시감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솔벤시 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공시제도 및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경영실태계량평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영업전략·자산운용·내부통제 등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있다.<sup>4)</sup> 이 경우 감독당국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경영상태 및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기존의 경영실적 중심의 공시제도를 보험회사의 리스크요인 및 관리능력 등 리스크 관련 공시를 확대함으로써 감독당국 이외의 시장참가자들에 의한 보험회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솔벤시 Ⅱ의 3층에 대한 벤치마킹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상시감시를 위한 보고제도와 시장규율 기능을 위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상 문제점을

4) 상시감시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자료와 외부에서 수집된 자료를 함께 검토·분석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 효과적인 상시감독을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기능의 효율성, 상시감시담당이력의 전문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강병호 2003, p. 94).

조기에 발견하여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시제도를 통해 보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 2. 조사 범위 및 방법

솔벤시 II의 3층은 크게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솔벤시 II의 보고제도는 양적 요건, 지배구조 및 보고·공시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supervisory review process)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제도이다. 감독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솔벤시 II의 1층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책임준비금 포함), 요구자본, 가용자본 및 투자 등의 양적 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또한 솔벤시 II의 2층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관리<sup>5)</sup>, 임원의 적격성, 아웃소싱, 내부통제, 내부감사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양적 요건 및 지배구조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보험회사의 보고 정보 및 공시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솔벤시 II의 공시제도는 재무정보 이용자가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sup>6)</sup> 최근 이 같은 공시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소비자, 채권자(금융기관), 투자자(기관), 정보중개기관(평가회사) 등에서 투자은행, 경쟁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사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5) 리스크관리는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감독 보고(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를 포함한다.

6) 시장 감시란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추가, 채권가격 등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 행사란 회사의 영업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가자 취하는 일련의 조치(예: 보유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의 처분, 요구수익률 인상, 추가적 신용공여·만기연장의 제한 등)를 의미한다(금융감독원 2009a, pp. 200~201).

이용자에 의한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참고로 Martin eling(2010)의 재무정보 이용자와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 기능과의 관계(〈표 I-1〉 참조)에 따르면 정보중개기관(예: 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의 변화 측정, 그리고 상품 및 회사 등급의 결정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 기능을 수행한다.

〈표 I-1〉 재무정보 이용자와 시장규율

구분	소비자 및 투자자			매개자(intermediaries)		
	소비자	투자자(주주)	투자자(채권)	신용평가기관	회계사/분석가	중개사 등
방법	소비자 수요	주가	채권수익	상품 및 회사 등급	투자자 추천	상품 추천
분석 지표	보험영업 성장 <sup>1)</sup> 및 해약	주가	수익률	등급 변화	신규 추천	신규 추천
보험 관련성	높음	제한적	제한적	높음	제한적	높음

주: 1) 보험료 증가 또는 보험계약건수 증가.

자료: Martin eling(2010), "What do we know about market discipline in insurance?"

이 제도들은 2009년에 유럽의회를 통과한 솔벤시 II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솔벤시 II 지침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정기보고, 수시보고,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을 통해 포괄적, 전향적으로 전망하는데 필요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리스크 노출 및 리스크 관리활동 등에 대한 질적, 양적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제출 받는다.<sup>7)</sup> 그리고 외부이용자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통해 포괄적, 전향적으로 전망하는데 필요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리스크 노출 및 리스크 관리활동 등에 대한 질적, 양적 정보를 공시자료(사업보고서, 결산서 등)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7)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0, p. 15).

이 제도들의 세부 요건 등은 현재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 이하 EIOPA)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논의 및 검토되고 있다. 먼저 EIOPA는 솔벤시 II 지침에 근거하여 2009년에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한 위임기준(안)을 권고하였고, 2011년에는 가이드라인(안)을 권고하였다. 최근 EIOPA는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한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13년에 최종 확정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의회를 통과한 솔벤시 II 지침, 그리고 EIOPA의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안) 등을 토대로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BIS)의 권고(예: 바젤 II),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이하 IAIS)의 권고(예: 보험핵심원칙 9(상시감시 및 보고) 및 보험핵심원칙 20(공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 등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고제도에 대한 세부 요건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솔벤시 II의 보고제도는 BIS 및 IAIS의 보고제도와는 직접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사는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솔벤시 II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BIS 및 IAIS의 권고 내용과 솔벤시 II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 II. 솔벤시 II의 배경 및 추진경과

---

### 1. 솔벤시 II의 배경

유럽 회원국들은 보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지급능력제도(솔벤시 I)에 의한 재무건전성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보험회사는 글로벌화 및 겸업화 전략<sup>8)</sup>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발달한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아울러 재무리스크 측정 모형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등 리스크 중심 경영을 강화하여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리스크 중심 감독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맞이하였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에 이를 반영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인구변화(예: 고령화) 및 사적 제도와 공적제도 관계(예: 공적 연금시스템의 재정문제) 등과 관련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를 필요로 하였고, 감독당국 역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현행 지급능력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 제고 등을 이끌어낼

---

8) 유럽 금융시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유화·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서에는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기존 보험회사의 인수, 보험회사의 은행 인수 등 자본 결합이 진행되었다(損保ジャパン総合研究所 2008, p. 6).

수 없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요인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감독체계인 솔벤시 II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sup>9)</sup> 이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단일 유럽보험시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이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기관투자자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 보험감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및 외부이용자 등에게 보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험회사가 항상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솔벤시 II는 현행 지급능력제도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sup>10)</sup> 첫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모든 보유리스크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각국 회계 실무 반영 등으로 보험회사 간 리스크 수준을 상호·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리스크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 전에 정성평가를 통해 조기 개입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급능력제도는 이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직접적으로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은 자국 국내법에 솔벤시 II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보험감독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솔벤시 II 지침을 반영한 자국 감독체계에 따라 자기자본 전략, 영업전략, 투자전략 등을 정비

9) EC(2003),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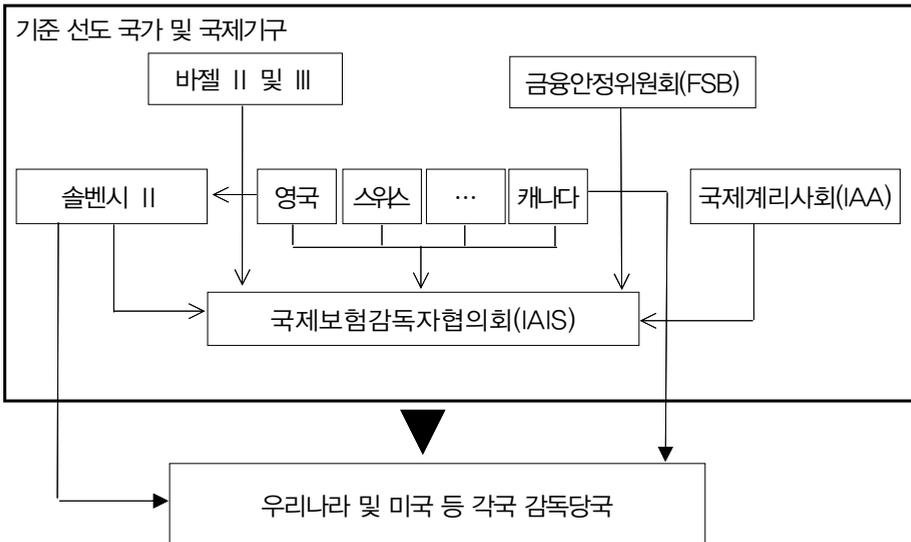
10) 보험개발원(2004. 6), 「EU 지급능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EU 솔벤시 II를 중심으로」, CR 2004-08, p. 4.

하여야 한다.

솔벤시 II는 유럽 회원국에서 보험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감독하고 있는 유럽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유럽 회원국 외 감독당국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솔벤시 II 지침은 유럽 회원국 외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유럽 회원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의 자국 보험감독체계에 대해 “동등성 검증(equivalence test)”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감독당국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는 솔벤시 II와 자국 감독체계 간 갭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솔벤시 II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및 각국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 이하 ICP)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II 지침 등을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 감독당국 또한 자국 감독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조하고 있다.

〈그림 II-1〉 글로벌 기준 선도 국가·국제기구와 감독당국 간 관계



자료: Simone Brathwaite(2010, s.2.)의 그림을 수정함.

예를 들어, 미국 NAIC는 SM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II를 참조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ORSA, 지배구조 등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II를 참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이하 RBC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솔벤시 II를 참조하였고, 또한 내부모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솔벤시 II를 참조하였다.

## 2. 솔벤시 II의 주요 특징

솔벤시 II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위험 기준 자본의 양적 요건, 가용자본의 질적 요건, 리스크관리 요건, 공시·보고 요건 등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솔벤시 II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프로파일을 토대로 양적 요건인 요구자본 등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솔벤시 II 지침은 양적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 및 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평가, 리스크 측정 방법, 리스크 측정 관련 제 가정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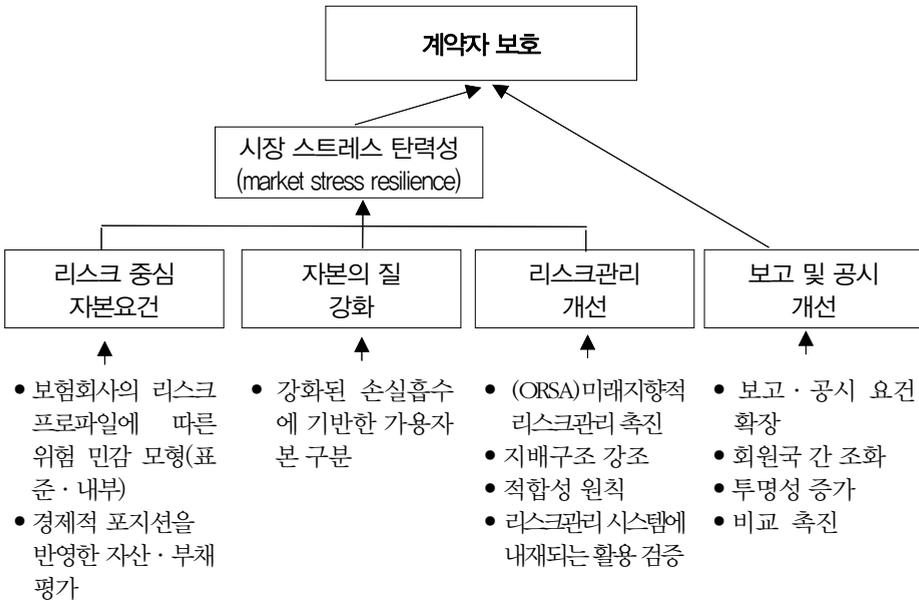
솔벤시 II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가용자본 규모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의 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솔벤시 II 지침은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본조달수단 중에서 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 지침은 유럽위원회 등이 고려한 자본의 질을 결정하는 요건, 자본의 질에 따른 가용자본 인정 비율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리스크관리 요건과 관련한 부문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리스크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지배구조, 적합성 요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솔벤시 II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요

구자본 산출 모형을 보장하는 위험관리 활용도 검증(use test)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솔벤시 II 지침은 ORSA, 지배구조, 적격성, 활용 검증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현행과 비교하여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에 대해 유럽 회원국 간에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솔벤시 II 지침은 정기보고, 수시보고,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II-2〉 솔벤시 II의 목적 및 주요 특징



자료: UK FSA(2011), p. 10.

이러한 솔벤시 II는 은행의 바젤 II와 유사하게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솔벤시 II의 1층은 리스크 중심 자본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는 요구자본, 책임준비금, 자산 및 부채 평가, 자기자본 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솔벤시 II는 요구자본을 보험업에 대한 감독을 단순한 한도규제에서 벗어나 보험회

사 스스로 리스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이하 MCR)과 지급능력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이하 SCR)의 이원적 요구자본 체제로 권고하고 있다. 이 요구자본의 계상에는 리스크 측정방법 및 가정, 리스크 간 상관관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요구자본의 계상에 표준모형이 아닌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솔벤시 Ⅱ의 책임준비금은 최선추정치와 리스크 마진의 합으로 산정한다. 책임준비금 중 최선추정치는 현행 유출가치 기준으로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고려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리스크 마진은 책임준비금이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추정치 외에 추가되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을 가능하게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 솔벤시 Ⅱ는 자산 및 부채 평가에 대차대조표에 리스크가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방식인 총재무제표 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솔벤시 Ⅱ의 자기자본은 리스크와 재무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으로, 요구자본(MCR 또는 SCR)을 충당하여야 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솔벤시 Ⅱ는 자기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항목의 특성과 손실흡수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솔벤시 Ⅱ는 손실흡수 능력이 적은 2종과 3종에 대해서는 감독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솔벤시 Ⅱ의 2층은 앞서 살펴본 리스크관리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등과 관련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검사를 재무, 조직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초점하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 규정상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상 중요한 결함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본 증액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IOPA 등은 이러한 감독기능을 솔벤시 II의 2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솔벤시 II는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적절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부터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솔벤시 II의 3층은 보험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감독당국이 계약자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이때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시장규율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EIOPA 등 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보고 요건, 보험회사의 공시 요건 등을 솔벤시 II 지침 등에 반영하였고, 이를 솔벤시 II 지침의 제3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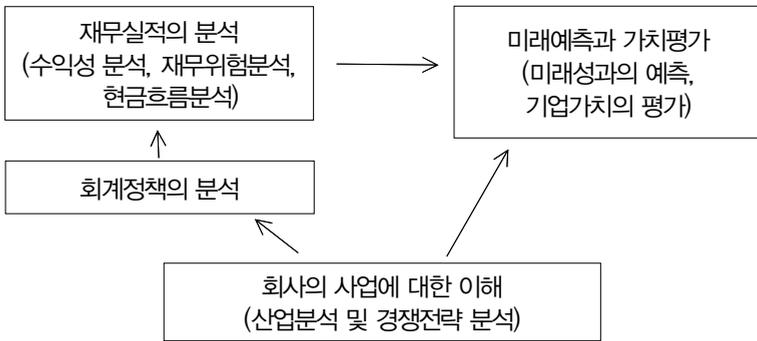
〈표 II-1〉 솔벤시 II의 기본 체계

1층(Pillar 1) 양적요건	2층(Pillar 2) 질적요건	3층(Pillar 3) 보고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중심 자본 요건</li> <li>• 표준모형</li> <li>• 내부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li> <li>• 리스크 관리(ORSA 포함)</li> <li>• 감독당국의 점검(SRP)</li> <li>• 자본 확충(capital add-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보고</li> <li>• 정기공시(리스크관리 포함)</li> <li>•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li> <li>• 기타</li> </ul>

이러한 3층 체계 중에서 3층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제도 및 공시 제도는 시의 적절하고,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감독행위 및 시장규율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솔벤시 II가 정보의 빈도 및 질에 대한 개선, 그룹감독체계에

대한 강화 등을 통해 개별 회사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들의 평가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솔벤시 II가 유럽 전체 리스크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진 자료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의 검토능력 또는 비교 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 재무실적 및 회계정책의 분석, 미래예측과 가치평가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다. 김권중·김문철(2007)은 이를 기업분석의 틀로 구조화하였다(<그림 II-3> 참조).

<그림 II-3> 기업분석의 틀



자료: 김권중·김문철(2007), p. 12.

먼저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회사를 분석함에 있어 대상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 내에서 해당 회사의 경쟁전략을 파악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핵심적 이익창출요인과 경영위험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의 핵심적 회계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한 분석은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이 현재의 수익성 수준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이 해당 회사의 미래

성과를 보다 잘 전망하여 감독목적 및 시장규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회사의 현재 수익성과 재무위험을 분석하고, 현금흐름 창출실적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협의를 재무제표분석”에 해당된다. 이때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재무활동의 효과를 구분하여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회계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경영자의 회계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회계수치의 왜곡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왜곡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왜곡된 수치를 조정한 후에 회계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sup>11)</sup>

마지막으로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기업의 미래성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에 근거하여 기업의 가치(주주지분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의 미래성과 예측은 앞에서 수행된 질적 분석과 재무실적 분석에 기초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은 미래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 3. 솔벤시 II 진행경과(3층 중심)

솔벤시 II의 3층과 관련한 현행 지침은 EIOPA이 2006년 및 2007년에 공표한 보고 및 공시 제도 관련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보고·

11) 경영자의 회계수치 왜곡을 제한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이 제정되지만, 모든 회사가 동일한 회계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제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비례법 등이 사용가능하고 이 중에서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추정은 경영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와 같이 경영자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회계기준에서 기업의 모든 회계처리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김권중·김문철 2007, pp. 20~21).

공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솔벤시 II 지침 제정안은 2009년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솔벤시 II 지침에 따라 EIOPA는 보고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위임기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여 2009년에 공표하였고, 2011년에는 보고 및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공표하였다.

〈표 II-2〉 EIOPA의 보고·공시 관련 주요 보고서

(공표)년월	보고서명
2006년 11월	솔벤시 II 지침 제정관련 보고 및 공시제도 권고안
2007년 3월	솔벤시 II 지침 제정관련 보고 및 공시제도 권고
2007년 11월	보고 및 공시관련 항목 및 형식의 조화 방안
2009년 10월	보고 및 공시 요건 관련 위임기준 권고
2011년 11월	보고 및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보고서

자료: EIOPA 홈페이지(<http://eiopa.europa.eu>).

참고로 BIS는 “은행 투명성 강화 보고서”(1998), 바젤 II (2004, 2009), “보상 공시요건 보고서”(2011) 등에서 은행의 공시 요건들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IAIS는 “보험핵심원칙 9(상시감독 및 감독보고) 및 보험핵심원칙 20(공시)”(2011)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 및 보고 요건들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보험회사 공시 가이드라인”(2002), “손해보험리스크 공시 기준”(2004), “투자리스크 공시 기준”(2005), “보험리스크 기준”(2006)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 및 보고 요건들을 권고하였다.<sup>12)</sup>

EIOPA의 보고 및 공시제도관련 권고안은 유럽 회원국 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럽 단일 보험시장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여 시장경쟁의 보증, 시장관행(market practices)과 감독관행(supervisory practices)의 수렴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솔벤시 II 지침 시행일에 대한 통일된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움

12) BIS 및 IAIS의 권고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니버스 지침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다. 이 때문에 솔벤시 II 지침의 시행일이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솔벤시 II의 위임기준(레벨 2) 및 가이드라인(레벨 3)은 옴니버스 지침 II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을 보험회사에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옴니버스 II 제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견에 따르면 위임기준(레벨 2) 및 가이드라인(레벨 3)은 솔벤시 II 지침과 함께 2014년에 보험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EIOPA는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고려하여 2013년 상반기에 보고·공시 제도관련 위임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sup>13)</sup>

따라서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은 솔벤시 II 지침, 위임기준(레벨 2) 및 가이드라인(레벨 3) 등이 시행될 때까지 현행 보고 및 공시 제도를 보험회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즉,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은 보고 징구권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야 하며, 외부이용자들이 현행 EU 지침에 따른 공시를 통해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보험회사의 공시 등과 관련한 유럽 지침에는 회사법 제4지침(78/660/EEC)<sup>14)</sup>,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sup>15)</sup> 등이 있다. 먼저 회사법 제4지침은 회사의 공시에 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지침인 보험회사 결산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sup>16)</sup>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결산지침에 따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식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표 II-3〉 참조).

13) EIOPA(2012), p. 6.

14) "Fourth Council Directive 78/660/EEC of 25 July 1978 based on Article 54 (3) (g) of the Treaty on the annual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222/11.

15) "Council directive of 19 December 1991 on the annual account and consolidated account of insurance undertakings(91/674/E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374/7.

16) 보험회사는 사업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법이 아닌 보험결산서류지침(91/674/EEC)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요건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연차보고서,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생명보험협회 2007, p. 6-1).

〈표 II-3〉 EU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문 및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li> <li>회사법 제4지침(78/660/EEC) 과의 관계 (일부 조항(예: 제 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6a조 등) 준용)</li> </ul>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표시 등</li> </ul>
대차대조표 양식	(생략)
대차대조표 특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자산, 부동산 및 관계사 투자자산 관련 특별 요건 (회사법 제4지침 제15조 제3항 적용)</li> <li>자산별 특별 요건(예: 사채, 담보대출 등)</li> <li>부채별 특별 요건(준비금, 미경과보험료 등)</li> </ul>
손익계산서 양식	(생략)
손익계산서 특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정별 특별요건(예: 총수입보험료, 출재보험료,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발생손해액 등)</li> </ul>
평가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별 평가규칙(주식 사항)</li> </ul>
주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해보험: 영업보험료, 경과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재보험 수지</li> <li>생명보험: 영업보험료, 재보험 수지</li> </ul>
연결 관련 주식 사항	(생략)

자료: EUR-Lex 홈페이지.

그런데 보험회사 결산지침은 상당부분 회사법 제4지침을 준용하고 있다(〈표 II-4〉 참조). 예를 들어 보험회사 결산지침은 결산서 및 연차보고서에 대해서는 회사법 제4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회사법 제4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회사법 제4지침 제1항에 따라 최소한 회사 사업의 전개 및 회사 상황에 관해 신뢰할 만한 설명을 표기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 II-4〉 보험회사 결산지침의 회사법 제4지침(78/660/EEC) 준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서 구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주석)</li> <li>• 결산서 공시</li> </ul>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li> <li>• 통합표시(중요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경우, 회원국 요구 시)</li> <li>• 직전연도 표시</li> <li>• 회원국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음.</li> <li>• 자산과 부채의 상계 및 수익과 비용의 상계: 금지</li> </ul>
대차대조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및 부채가 여러 계정과목과 관련된 경우 이를 공시</li> <li>• 자기주식 및 관계사 주식 공시</li> <li>• 담보 및 약정: 각주, 주석</li> </ul>
대차대조표 특별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자산 변동, 고정자산 잔존가치</li> <li>• 창업비(formation expenses)</li> <li>• 부동산, 지분, 재평가, 준비금, 선수수익</li> </ul>
손익계산서 특별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외손익 및 세금</li> </ul>
평가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원칙, 취득가 기준 평가 항목 등</li> <li>• 개발비 및 영업권, 유형고정자산, 원재료, 유동자산, 재평가, 준비금 등 평가규칙</li> </ul>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평가방법, 회사명 및 소재지, 자본금, 주식 현황 등</li> <li>• 주요 공시</li> </ul>
연차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사건, 성장성, 연구개발 활동, 자기주식 인수 관련 정보</li> <li>• 지배구조(리스크관리)</li> </ul>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의견서(거절 이유서), 이익의 적절성 또는 손실 계상</li> </u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보고서와 결산서의 일치 입증</li> </ul>

자료: EUR-Lex 홈페이지.

---

## Ⅲ.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체계

---

### 1. 보고·공시 체계와 EIOPA의 검토방향

#### 가. 보고·공시 체계

솔벤시 Ⅱ 지침에 따르면 3층은 정기보고(Regular Supervisory Report, 이하 RSR), 정기공시(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이하 SFCR),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기보고(RSR)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및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서와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솔벤시 Ⅱ는 이를 지침 제3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게 감독목적에 필요한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관한 서술형 보고서(질적 정보) 및 서식형 보고서(양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공시(SFCR)는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솔벤시 Ⅱ는 이를 명시적으로 지침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서술형 보고서(질적 정보) 및 서식형 보고서(양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예외적으로 비밀유지의 필요성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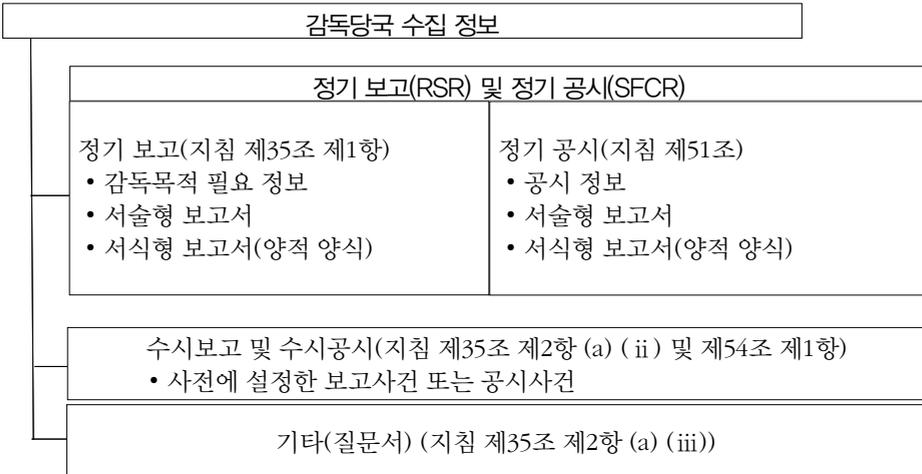
---

17)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은 일반 감독 권한으로 보고 보고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다. 생명보험 지침(2002/83/EC) 제13조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은 자국이 면허를 교부한 보험사업자에 대해 모든 업무를 포함한 재무상태 및 지급여력을 기재한 계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통계서류를 첨부한 정기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생명보험협회 2007, p. 8-1).

교하여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공시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수시공시는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솔벤시 II 지침은 이를 제35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사전에 설정한 보고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전에 설정한 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 외부이용자들에게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그림 III-1〉 솔벤시 II의 보고·공시 체계



자료: CEIOPS(2009), p. 17.

IAIS(2011) 역시 솔벤시 II처럼 각국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권고하고 있다. IAIS는 보험핵심원칙 9(감독검사 및 보고)에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sup>18)</sup>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각국

18) 보고 자료는 재무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종 통계 자료, 계리보고서, 지급 여력보고서 등을 말한다.

감독당국이 보고 자료의 제출 범위·내용·빈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IAIS는 보험핵심원칙 9(감독검사 및 보고)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AIS는 솔벤시 II와 같이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sup>19)</sup>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솔벤시 II처럼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보험회사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사전 설정한 사건을 보험회사에게 수시로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은 이러한 정보들을 상시감시 기능(예: 경영실태계량평가 및 위험평가)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sup>20)</sup>

## 나. EIOPA의 검토 방향

### 1) 정기보고

솔벤시 II는 유럽 회원국 간 보험감독체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역시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IOPA 등은 이 목표하에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IOPA는 보고의 질 강화, 규제차익 및 처리 불균형의

19) IAIS는 최근 보고제도 관련 보험핵심원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검사기간에는 계량평가부문과 비계량평가부문을 종합하여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검사기간 외에는 계량평가부문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분기별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계량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

회피, 통계 목적을 위한 정보의 수집 속도 및 질 강화,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 감소, 감독프로세스 기여 등을 보고제도 검토방향으로 설정하였다.<sup>21)</sup> 이와 더불어 EIOPA는 회원국별 특성 및 유연성 니즈 반영도 보고제도의 검토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방향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 EIOPA의 검토 방향

보고제도	공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의 질 강화</li> <li>•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의 회피</li> <li>• 정보 수집의 속도 및 질 강화</li> <li>• 보고 부담 경감</li> <li>• 감독프로세스 기여</li> <li>• 회원국별 특성 반영</li> <li>• 유연성 니즈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쟁 촉진</li> <li>• 시장규율 강화</li> </ul>

자료: EIOPA 홈페이지(<http://eiopa.europa.eu>).

#### 가) 보고의 질 강화

먼저 EIOPA는 보고의 질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였다. 솔벤시 II 지침은 보험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관리목적 보고, 감독목적 보고 및 재무목적 보고 등을 위한 단일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향후 재무회계의 규칙과 솔벤시 II 지침의 평가 규칙을 충분히 통합하여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단일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생산되는 각종 보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CEIOPS(2007b), p. 6.

#### 나)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의 회피

EIOPA는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였다. 만약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이 보고제도를 달리 운영한다면, 이는 보험회사 간에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IOPA는 단일 보험감독체계의 구축을 지향하여 회원국 내 보험회사 간 규제차익 및 회계처리 불균형을 회피하고자 한다.

#### 다) 정보 수집의 속도 및 질 강화

EIOPA 등은 통계 목적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 수집 속도의 개선과 정보의 질 강화를 중점을 두고 보고제도 관련 위임기준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였다. 솔벤시 II 하에서 감독당국은 기존보다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만약 회원국 내 모든 보험회사가 솔벤시 II의 보고제도를 적용받는다면 감독당국들은 솔벤시 II 하에서 필요한 감독목적 정보를 이들 보험회사들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IOPA도 회원국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들로부터 통계 목적을 위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 라) 보고 부담 경감

EIOPA는 관리목적의 보고, 감독목적의 보고 및 재무목적의 보고 등이 모두 가능한 단일 시스템을 보험회사가 구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러한 단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들은 솔벤시 II에 따른 감독목적의 보고를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감독목적의 보고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 마) 감독프로세스의 개선

감독당국은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유럽 회원국 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력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솔벤시 II의 보고제도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솔벤시 II의 보고제도는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 간의 의견 교환을 촉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 바) 회원국별 특성 반영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감독 목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유럽 회원국 내 자국 보험감독체계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들은 각기 다른 보험감독 특성(예: 회원국별 재무 회계와 감독회계 간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조화를 위한 형식, 소비자 보호 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감독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 솔벤시 II는 이를 고려하여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이 보고제도에 자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유럽 회원국 감독당국들은 이를 통해 보고제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특정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 사) 유연성 니즈

감독당국이 계약자 보호 등의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환경 변화에 따라 보고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IOPA는 이에 보고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럽 회원국 내 감독당국들이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IOPA는 특정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감독당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2) 정기공시

솔벤시 II는 보고제도와 같은 목표를 공시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즉, 솔벤시 II는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 구축 및 유럽 회원국들의 보험감독체계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IOPA 등은 솔벤시 II 지침에 근거하여 공시 관련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 및 검토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렴하고 있다. EIOPA 등은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level playing field) 및 시장규율 강화를 공시제도의 검토방향으로 설정하였다.<sup>22)</sup>

이는 EIOPA 등이 회계공시처럼 시장참가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통해 감독수단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공시제도를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IOPA 등의 공시제도 인식은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제도 논의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보험업무 외에 투자업무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투자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이 상품들은 고도로 정교한 거래과정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나 관리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이 한계로 인해 명문화된 법규에 기초한 규제로는 급변하는 금융거래현실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외부이용자 및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업무활동과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감독당국은 업무활동범위 확대로 보험회사의 투명성 확보가 힘들어짐에 따라 보조적 감독기능으로서 시장규율의 잠재력을 더욱 의존하게 되고 있다.

솔벤시 II가 공시제도를 감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솔벤시 II에서의 시장규율은 바젤위원회(2005)의 시장규율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22) CEIOPS(2007), p. 9.

수 있다. 바젤위원회(2005)에 따르면 시장규율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결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하는 감시 및 영향력 행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바젤위원회(2005)는 이 시장규율을 시장 감시(market monitoring)와 영향력 행사(influence)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감시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주가, 채권가격 등 시장신호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향력 행사란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가자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sup>23)</sup> 이 시장규율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에게 사전적으로 감시·규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안전·건전 경영을 제고하는 감독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그런데 공시제도가 시장규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제도와 충실한 공시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EIOPA 등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참가자의 자율적 판단이 용이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 산출에 대한 양적 수치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및 ORSA 등에 대한 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 예를 들어, 보유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의 처분, 요구수익률 인상, 추가적 신용공여·만기연장의 제한, 예금인출, 거래중단,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24) 금융감독원(2009a), p. 200.

## 2. 보고·공시의 원칙, 주기 및 작성방법

### 가. 보고·공시의 원칙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솔벤시 II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지급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중요한 질적 정보(또는 비계량적 정보)와 양적 정보(또는 계량적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장규율에 필요한 지급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중요한 질적 정보(또는 비계량적 정보)와 양적 정보(또는 계량적 정보)를 시장참가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우선적으로 솔벤시 II 전반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요성 및 비례성 원칙을 적용되어야 한다.<sup>25)</sup> 아울러 솔벤시 II는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정보 그리고 시장참가자에게 공시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II는 적시성

25) 솔벤시 II는 중요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EIOPS 2009, pp. 22~23).

*금융회사의 재무보고서는 각 중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표기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이용자의 평가나 의사결정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내부의 리스크 관리목적 및 감독평가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비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공시제도 및 보고제도 모두에서 적용하고 있다(CEIOPS 2009, p. 21).

*감독당국이 제출받아야 하는 세부 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지니고 있는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timeliness), 목적적합성(relevance), 신뢰성(reli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consistenc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접근성(accessibility) 등을 보고 및 공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IAIS, BIS 등의 공시제도에서도 권고되고 있다. IAIS는 이를 보험핵심준칙(ICP 20.1)에서 “공시정보의 속성”으로 권고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BIS는 이를 “은행 투명성 강화” 보고서에서 “정보 투명성의 요건”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 Ⅲ-2〉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원칙

원칙	솔벤시 Ⅱ		IAIS	바젤 Ⅱ	IFRS
	보고제도	공시제도	공시제도	공시제도	공시제도
적시성(timeliness)	○	○	○	○	○
목적적합성(relevance)	○	○	○	○	○
신뢰성(reliability)	○	○	○	○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	○	○	○
일관성(consistency)	○	○	○	- <sup>1)</sup>	○
포괄성(comprehensiveness)	○	○	○	○	○
접근성(accessibility)	○	○	○	-	○

주: 1) 바젤 Ⅱ는 일관성을 비교가능성에 포함시키고 있음.

자료: BCBS(1998), pp. 14~16; IAIS(2011), pp. 301~302; CEIOPS(2009), pp. 5~6.

26) 보험핵심원칙 20.1 보험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 개황, 지배구조, 내부통제, 재무적 위치, 성과, 위험에 대한 세부 계량 및 비계량 정보를 최소한 일년 주기로 적절하게 공시한다. 특히, 공시된 정보는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하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시점에 최선정보로 적시성이 있어야 하고, 포괄적이고 의미 있으며, 의사결정을 기초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12), 『IAIS 보험핵심원칙 Ⅱ』, p. 113 참조).

한편,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sup>27)</sup>을 통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공시자료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공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적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28)</sup>

앞서 살펴본 보고 및 공시의 원칙에 명시적 개념은 BIS의 보고서(1998)에서 살펴볼 수 있다. BIS는 1998년에 “은행 투명성 강화”를 공표하였는데, 이는 은행 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 및 감독정보에 관한 지침으로 적시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및 포괄성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9)</sup>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개념은 CEIOPS의 보고서(2009)에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일반원칙) 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행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권고하고 있고, 아울러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적시성,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질적 특성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채택 전 회계기준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권고하였다(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b, pp. 58~59).

29) 이 지침은 “투명성”을 정보이용자가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업무활동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1) 적시성 및 목적적합성(timeliness and relevance)

정보로서 유용성이 있으려면 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가 시장참가자들이 투자, 대출 또는 기타 익스포져 공여 시 예상되는 리스크와 수익, 장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이 정보는 목적적합성한 정보라고 간주되어질 수 있다. 또한 정보가 감독당국이 업무활동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이 정보 역시 목적적합성이 있다고 간주되어질 수 있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적시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해당회사의 리스크 내용 및 리스크 관리 성과에 대한 적절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적기에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여야 한다.

### 2) 신뢰성(reliability)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는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나타내주거나 정보가 의도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각종 사건과 거래의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본질을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검증가능하고,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없이 불편부당하며, 신중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아 완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생명력은 정보를 그릇되게 하거나 판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생산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다만, 신뢰성은 목적적합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 내용을 매우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주요 방안 중의 하나인 외부감사는 정보의 공개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sup>30)</sup>

30) 수익 예측과 같은 장래 전망에 관한 정보는 신뢰성보다는 목적적합성에 중점을 두

### 3)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투명한 정보는 반드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외부이용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은 금융회사 간, 국가 간 및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각 은행이 매 회계기간에 일관된 회계방침 및 절차에 따라 항목별로 동일한 측정개념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회계방침 및 절차는 회계기준의 변경과 같은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단 회계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외부이용자들이 공시 정보를 은행 간 및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외부이용자들은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여타 은행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기간 간 비교는 은행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추세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종 재무보고서는 계량정보가 1 회계연도 이상의 과거 수치와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정보의 기간 간 비교에 대해 솔벤시 II는 일관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포괄성(comprehensiveness)

외부이용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들이 평가에 이용하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에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종종 다양한 업무활동과 법인실체에 관한 정보를 집적, 통합 및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이 분야별로 각기 다른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거나, 특정 자회사가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적시에 파악하기 위하여 피규제회사와

---

게 되지만 과거 사실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협약하여야 한다. 자회사가 독립법인이라는 점과 그룹 내 연결대상인 주요 업무 활동과 주요 자회사에 관해서는 요약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감독기관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접근성(accessibility)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감독당국은 감독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참여자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고정보는 감독당국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정보는 시장참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정보 보고 및 공시는 비용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다양한 전달방식에 대한 상대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등 전자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할 수 있다.

EIOP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선호 및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IAIS도 전자 채널(인터넷 등)을 통한 공시를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 나. 보고 · 공시의 주기와 작성방법

솔벤시 II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작성기준일로부터 3개월 또는 4개월 내에 공통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EIOPA는 보험회사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빈도를 감독 정도와 연계할 것을 감독당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표 III-3〉 솔벤시 II의 정기보고·정기공시 주기 및 제출기한

구분		주기	제출기한 (작성기준일기준)	작성방법	내부승인 (이사회)
정기 보고	서술형 보고서	감독 정도와 연계 <sup>1)</sup>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공통양식	○
	서식형 보고서(양적)	연 <sup>2)</sup>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공통양식	○
정기 공시	서술형 보고서	연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공통양식	○
	서식형 보고서 <sup>3)</sup>	분기	3주 또는 4주 이내	공통양식	○

- 주: 1) 최소한 3년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요약 및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하여야 함.  
 2) 그룹은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3) 정기보고의 양적 서식 중 일부(예: 요구자본(MCR, SCR), 책임준비금, 보험료 및 손해액, 투자자산 및 자기자본 등)만 공시하여야 함.

자료: Deloitte(2009, p. 10) 및 MAZARS(2011, p. 2).

한편, BIS(바젤 II)는 보고제도의 공통양식, 보고빈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IAIS는 솔벤시 II와 달리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제출범위, 내용 및 주기 등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는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양적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검사기간 중에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검사외의 기간에는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위험평가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비계량항목에 대해서 연단위로 평가하고,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와 관련한 비계량항목에 대해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처럼 공통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솔벤시 II는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이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제정한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정기공시의 빈도는 연 1회 이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공시제도에 대해 IAIS는 1년에 최소한 한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IS(바젤Ⅱ)는 질적 정기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규정<sup>31)</sup>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에 대해서는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에 대해서는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분기별 임시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3. 보고 · 공시의 구조

#### 가. 정기보고

솔벤시 Ⅱ 정기보고는 사업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크게 3개 부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첫 번째 부문은 허가·통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이다.<sup>32)</sup> 두 번째 부문은 감독당국 점검(Supervisory Review Process, 이하 SRP)에 필요한 정보이다. 마지막 부문은 그룹 감독에 대한 정보이다.<sup>33)</sup> 이 중 두 번째 부문이 정기보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자기자본 규제방식(pillar 1)만으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때

31) 대형은행은 자기자본 내역을 분기기준으로, 리스크 익스포져 또는 다른 항목이 급변하는 은행은 관련 정보를 분기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2) 첫 번째 보고 부문은 비즈니스 허가에 앞서 요구되는 정보, 지점 설치 허가에 관한 정보, 포트폴리오 이전 허가에 관한 정보, 지분을 인식·처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cross-border 활동에 대한 양적 정보 등에 대한 보고이다. CEIOPS는 이 보고 부문에 대해 유럽회원국 간 조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CEIOPS는 이를 솔벤시 Ⅱ의 특별 이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33) CEIOPS(2007b), p. 10.

문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 수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감독당국의 정기보고는 사전에 정의된 보고 대상 사건에 관한 정보 보고와 사업지속성 정보(on-going information) 보고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sup>34)</sup> 먼저 사전에 정의된 보고 대상 사건에 관한 정보는 내부모형 승인 또는 부분내부모형 승인에 대한 정보, 적격성 요건의 통지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 악화 및 요구자본 요건 미준수의 통지에 관한 정보, 내부모형의 미준수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지속성 정보에는 회사 개요 및 경영성과, 지배구조 시스템, 평가원칙,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집중, 리스크 경감, 리스크 민감도, 자본 구조, 자본 니즈, 자본 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IOPA(2009)는 감독당국의 정기보고와 관련된 사업지속성 정보에 대해 <표 III-4>와 같은 솔벤시 II의 정기보고 구조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요약(Executive Summary), 경영성과(Business and Performance), 지배구조(System of Governance),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 자산 및 부채 평가(Regulatory Balance Sheet),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내부모형, 양적 양식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III-4> 정기보고·정기공시의 구조

정기보고의 구조		정기공시의 구조	
서술형	경영성과(목적 및 전략 포함)	서술형	경영성과(목적 및 전략 제외)
	지배구조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리		자본관리
	내부모형		내부모형
서식형	양적보고 양식(모든 양식)	서식형	양적보고 양식(일부 양식)

자료: CEIOPS(2009), pp. 84~86.

34) CEIOPS(2007b), p. 11.

이와 같이 솔벤시 II는 정기보고 구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BIS와 IAIS는 그렇지 않다. 먼저 BIS(1999)는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의 감독당국에게 포괄적인 감독보고제도의 확립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다. BIS는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공시제도에 대한 요건만을 권고하고 있다. 즉, BIS는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IAIS는 보고제도에 대해 보험핵심원칙만을 총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IAIS는 보험핵심원칙 9(이하 ICP 9)에서 보고제도에 대해 감독 니즈를 토대로 전체 시장의 구조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IAIS는 보험회사의 상황 및 리스크관리 방법도 보고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IAIS는 솔벤시 II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제도에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AIS는 형식적으로 솔벤시 II 처럼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Pillar 3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BIS처럼 공시제도만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 솔벤시 II, 바젤 II 및 IAIS의 보고 항목

구분	항목
솔벤시 II	요약, 경영성과(회사 개요 포함),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보고 양식
바젤 II	별도 규정 없음 <sup>1)</sup>
IAIS	별도 규정 없음

주: 1) 바젤 II와 IAIS는 보고제도를 솔벤시 II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정기보고에 대한 EIOPA의 권고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EIOPA는 앞서 살펴본 〈표 III-4〉와 같은 정기보고 구조 하에서 보험회사에게 1층(정량적 요건) 및 2층(정성적 요건)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정보, 그리고 내부·외

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Deloitte(2011)에 따르면 이는 자본관리에 대한 서술형 보고, 양적 보고 양식에 의한 서식형 보고에서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Deloitte는 솔벤시 II의 정기보고와 현행 영국의 정기공시 간 갭 분석을 실시하였다. Deloitte는 이 갭 분석을 통해 자본관리 및 양적 보고 서식은 현행 제도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지배구조 시스템,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산 및 부채 평가(지급여력 목적)는 현행 제도와는 중간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요약 및 경영성과에서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Deloitte의 이러한 분석은 솔벤시 II로 전환하면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을 측정하는 대상, 기준, 방법 등을 크게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및 양적 보고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구자본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기존보다 많은 완전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35)</sup>

〈표 III-6〉 솔벤시 II의 보고·공시와 현행 보고 간 차이(영국)

작은 차이 (less significant)	중간 차이 (significant in some areas or moderate gaps)	큰 차이 (significant)
요약 경영성과	지배구조 시스템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지급여력 목적 평가)	자본관리 양적 보고 서식 (연/분기)

자료: Deloitte(2011), "Solvency II reporting : Introduction to the new world of regulatory reporting for insurers", s.11.

35) KPMG의 201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회사들은 보고/공시 분기 양식, 보고/공시 연 양식, 서술형 보고, 서술형 공시, 그룹 보고의 순서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설문대상 회사들은 분기 또는 연 양적 보고·공시 양식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원인으로 응답하였다(KPMG 2011, p. 3).

## 나. 정기공시

솔벤시 II의 정기공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장참가자에게 리스크관리 및 통제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정책에 대한 정보, 보험회사의 미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및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철학과 방침 및 방법론, 리스크의 발생이유 및 경위, 리스크관리 및 통제 방법, 리스크관리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여부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에게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생존가능성 및 궁극적인 영업지속능력을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자료와 함께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과 그 유효성을 비롯한 리스크 익스포저에 관한 양적, 질적 정보에 대한 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에게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전략에 관한 금융회사의 공시 내용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보험회사의 업무, 경영진 및 지배구조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법적 경영구조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활동과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관한 정보인 금융회사 조직에 관한 사항(이사회 조직, 최고경영진 조직, 기본조직구조 등), 보수방침을 포함한 유인제도(경영진에 대한 총급여, 성과급 상여금, 주식옵션 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는 시장참가자들이 보험회사의 업무활동을 적절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에게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공시된 정기공시 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방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방침, 관행 및 절차는 국가별로 다르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솔벤시 II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에게 요약,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부채,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양식 등을 정기적으

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보고제도와 동일한 구조 및 유사한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III-4〉 참조).

그러나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두 제도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시되는 내용과 보고되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감독당국은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양적 및 질적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고 받아 감독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과거 및 현재 관점에서 실현된 정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장래 감독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과 함께 리스크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고 내용을 확인,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투자자 등)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 정보에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보험회사는 과거 관점과 현재 관점에서 실현된 정보(영업성과, 자본적정성 수준),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기보고 제도는 과거 및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기공시는 과거 및 현재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기보고는 공시되지 않은 기밀정보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하나, 정기공시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기보고에서는 모든 양적 양식을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기공시는 대차대조표, 보험료·손해액·사업비, 요구자본, 최저요구자본, 책임준비금 등의 일부 양적 양식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솔벤시 II의 정기공시는 IAIS 및 바젤 II의 정기공시 기본 항목과 매우 유사하다. 먼저 IAIS는 보험회사에게 일반현황, 책임준비금, 자본적정성, 재무적 도구 및 투자,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등의 공시를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IAIS는 모든 항목에 대해 계량 정보 및 비계량 정보의 공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IAIS의 정기공시 항목을 솔벤시 II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바젤 II는 신BIS협약(2005)에 따라 일반원칙, 적용범위, 자본구조, 자본적정성,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등을 공시할 것을 은행감독당국 및 은행 등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때 은행은 모든 항목에 대해 계량 정보 및 비계량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일반 원칙의 하나인 공시정책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야 한다. IAIS와 마찬가지로 BIS의 정기공시항목을 솔벤시 II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7〉 솔벤시 II, 바젤 II 및 IAIS 등의 정기공시 항목

구분	공시 항목
솔벤시 II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 및 부채 평가, 자본관리, 내부모형, 양적 보고 양식
바젤 II	일반원칙, 적용범위, 자본구조, 자본적정성,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IAIS	회사 개요, 경영성과, 지배구조, 재무적 도구와 투자, 책임준비금, 자본적정성, 전사적 리스크관리, 보험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	요약,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지표, 위험관리, 기타 경영 현황, 재무제표, 기타

다음으로 솔벤시 II와 현행 공시관련 EU 지침<sup>36)</sup>과 비교하면, 보험회사 결산 지침 및 회사법 제4지침은 솔벤시 II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ORSA, 내부모형 등

36) 보험회사는 회사법 제4지침(78/660/EEC), 보험회사 결산지침(91/674/EEC) 등에 근거하여 결산서(annual account) 및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결산지침(91/674/EEC)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식사항 등의 결산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법 제4지침 제4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소한 사업성장 및 경쟁관계, 중요한 사건, 회사의 장래성장, 인수합병 등을 서술하고 있는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회사법 제4지침 제46a조에 따라 지배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서술하여야 한다.

- 지배구조 규범(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 국내법상 요건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배구조 관행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법상 지배구조 규범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
-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주요 특징 서술

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지침들은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등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표 III-8〉 보험회사 정기공시 관련 유럽 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험회사 결산지침 (91/674/EEC)	서문 및 적용대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규정, 대차대조표 양식, 대차대조표 특별 규정, 손익계산서 양식, 손익계산서 특별 규정, 평가 규칙, 주식 사항
회사법 제4지침 (78/660/EEC) (준용 내용)	일반 조항(결산서 구성),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반 조항, 대차대조표 양식, 대차대조표 특별 조항, 손익계산서 특별 조항, 평가규칙, 주식사항, 연차보고서 내용, 공표, 감사

자료: 1. "Council directive of 19 December 1991 on the annual account and consolidated account of insurance undertakings(91/674/E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374/7.  
 2. "Fourth Council Directive 78/660/EEC of 25 July 1978 based on Article 54 (3) (g) of the Treaty on the annual accounts of certain types of compani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222/11.

## 4. 기타

### 가.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

솔벤시 II는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솔벤시 II는 공시정보의 적절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IOPA의 수시공시 위임기준(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소한 요구자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솔벤시 II는 지급여력 및 재무포지션에 변화를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IOPA의 수시보고 위임기준(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경영전략 변경, 합병 및 매각, 조직개편, 중요한 소송 및 사고, 자기자본 요건 미준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표 Ⅲ-9〉 솔벤시 Ⅱ의 수시보고·수시공시 요건

구분	보고 또는 공시 요건
수시보고	경영전략 변경, 합병, 매각, 조직개편, 중요한 소송 및 사고, 자기자본, 책임준비금, 감독요구자본 등의 수준변화, 새로운 리스크, 운용 실패, 그룹 간 거래
수시공시	최소한 요구자본(SCR 또는 MCR)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CEIOPS(2009), pp. 137~138.

한편, IAIS는 솔벤시 Ⅱ와 달리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의 수시보고 및 수시공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무건전성의 미준수, 경고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긴급조치 발생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sup>37)</sup>

## 나. 외부 감사

솔벤시 Ⅱ는 가용자본, 자산·부채, 수입·비용, 이익·손실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먼저 솔벤시 Ⅱ는 가용자본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와 감독회계 간 일치, 가용자본 구조·규모·질 등의 질적 정보와 가용자본의 양적 정보를 외부감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책임준비금 분석 등의 질적 정보, 그리고 대차대조표, 투자자산 등의 양적 정보를 외부감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비용 및 이익·손실과 관련해서는 수익·비용의 인식 기준 및 제 가정의 질적 정보,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양적 정보를 외부감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8)</sup>

37)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수시공시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영국은 보험회사에 외부감사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은 외부 감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Deloitte 2009, p. 6).

<표 III-10> 솔벤시 II의 3층(보고·공시)과 외부감사 요건

항목	내용	양적 정보	질적 정보
자기자본 공시	재무회계와 감독회계 간 일치		○
	MCR 및 SCR 미준수(세부사항)		○
	자기자본	○	
	자기자본 구조, 양 및 질		○
자산, 부채 및 자본	대차대조표	○	
	기타부채 측정기준 및 기타 정보		○
	책임준비금 측정기준· 측정방법· 제 가정		○
	자산 평가기준· 측정방법· 제 가정		○
	자산 및 부채의 만기(Expected maturities)		○
	생명보험 - 자기자본 변화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변화 분석 <sup>1)</sup>		○
	MCR	○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변화 분석		○
	SCR - 표준모형	○	
	투자자산 요약(그룹별)	○	
수입, 비용, 이익 및 손실	수익 및 비용 인식 기준 및 제 가정		○
	생명보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증감	○	
	생명보험 수익 분석	○	
	손해보험 진전 정보	○	
	손해보험 책임준비금(그룹별)	○	
	유배당 이익기여	○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	○	
	보험 평가기준(양적 가정)	○	

주: CRO Forum은 EIOPA에 책임준비금 변화 분석(롤 포워드 분석)에 대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자료: CEIOPS(2009), pp. 134~136.

---

## IV.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요건<sup>39)</sup>

---

### 1.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 가. 경영성과(business and performance)

감독당국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이용자들은 재무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재무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의 안전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의 평가에는 잠재적인 재무상태의 변동, 장래의 예금 및 채무상환 능력, 배당능력 및 자기자본 증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장래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자금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는 재무성과 특히, 수익성과 기간별 수익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또한 기타 재무성과에 관한 양적 지표, 수익과 비용의 세무내역, 재무성과에 관한 경영진의 토론 및 분석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경영성과 부문에서 경영환경, 영업성과 및 영업외성과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시 요건과 공시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

39) IV장에서는 CEIOPS(2009)의 위임기준(안)을 중심으로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와 관련한 요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경영성과 공시 요건

### 가) 경영환경 공시

EIOPA는 보험회사에게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환경의 특징, 당년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법인격, 등록소재지
- 소유자 및 보험회사 모회사 소재지
- 보험회사의 중요 영업 종목 및 국가
- 큰 영향을 받은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중요 사건
- 직전 회계연도 이후 발전, 성과 및 포지션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 주요 관계자와의 거래
- 주주, 임직원 감독자와의 중요한 거래, 그룹 간 거래, 주주 배당 및 계약자 배당에 관한 정보

### 나) 목적 및 전략 공시

EIOPA는 경영 목적 및 전략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게 공시 요건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 다) 보험영업성과 공시

EIOPA는 보험영업성과와 관련하여 보험종목별 지역별 보험영업성과, 보험 영업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보험회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EIOPA는 그룹에 속한 보험회사에게는 그룹과 관련된 보험영업내용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룹 관련 보험회사는 그룹관련 보험영업성과, 재무조정에 따른 성과 전가 및 재보험 프로그램을 공시하여야 한다.

### 라) 투자영업성과 공시

EIOPA는 투자영업성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룹 내 거래 및 미불잔고(outstanding balance)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 투자자산 그룹별 손익(예: 생명보험 부문 투자, 특별계정 관련 투자, 투자 연계계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등)
- 유가증권관련 직·간접 손익(예: 기타포괄손익)
- 주주 및 임직원과의 거래, 주주배당 및 계약자 배당에 관한 정보
- 무형/유형 자산 및 금융상품(파생상품)의 상각 또는 손상이 투자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투자영업비용(전년도 비교) 및 변동 이유
- 그룹으로부터의 투자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손익, 그룹 내 거래

### 마) 영업외성과 공시

EIOPA는 영업외성과와 관련하여 당기 중요한 보험영업외 수익 및 비용을 공시하도록 보험회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 보험영업외 수익 및 급여(수익 및 비용별 구분)
- (그룹 관련 보험회사) 그룹 내 다른 관계사와 관련된 중요 수익 및 비용
- 중개활동, 인소싱 및 기타 보험외 활동에 대한 손익

## 2) 경영성과 보고 요건

### 가) 경영환경 보고

EIOPA는 보험회사가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경영 계획 기간(business planning time horizon) 내 발전, 성과 및 경쟁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추세 및 요인
- 직전 연도 이후 경영환경 변화
- 임직원 현황
- 경쟁지위, 경영활동의 장단점, 경영 모델(예: 신규 사업 인수 방법, 클레임 처리, 아웃소싱 등)
- 그룹 내 개별 회사별 영업활동 및 손익(주요 자회사, 보험영업활동 영위 여부, 규제회사 여부)
- 자회사 현황(그룹 조직도 포함)
-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규제 및 법적 이슈의 중요 특징
-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시장 발전

나) 목적 및 전략 보고

EIOPA는 보험회사가 경영 목적 및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재무적 및 비재무적 목적을 상세히 서술, 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및 리스크 전략 요약(예상시기 포함)
- 보험회사의 전략 상 중요 변화(직전 회계연도와 비교)
- 경영 계획 기간 관련 상세 내용

다) 보험영업성과 보고

EIOPA는 보험회사가 회계 제도에 따른 보험영업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보험종목별 및 지역별 분석, 회사 내부 조직의 보험영업성과(보험료 및 보험금) 검토 및 분석
- 보험종목별 계획 대비 성과 및 계획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관련

상세 내용(예: 예상하지 못한 거대 손해, 보험료 규모)

- 당년도 보험영업비용(과거 경험과 비교) 및 장래 예상 보험영업비용(보험금 누수 및 보험계약자 사기의 평가를 포함)관련 상세 내용
- 보험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예: 알려졌거나 예상된 상당한 보험금 지급)과 경영 계획 기간 내 보험영업성과 전망
- 재보험, ART<sup>40)</sup> 및 금융재보험 프로그램(보험사고 미발생 프로그램 포함)
- 보험영업성과 전반에 대한 회사 내부 조직의 검토 및 분석

#### 라) 투자영업성과 보고

EIOPA는 보험회사가 투자영업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부문별 투자영업성에 대한 회사 내부 조직의 검토 및 분석(예: 기금, 자산 유형)
- 투자영업비용 관련 상세 내용(장래 예상과 비교)
- 이자율, 환율 및 기타 시장 지표에 대한 보험회사의 제 가절

#### 마) 영업외성과 보고

EIOPA는 보험회사가 영업외성과와 관련하여 내부조직의 분석, 그리고 차기 보고 시 예상되는 보험영업의 손익에 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3) 경영성과 관련 공시 및 보고 요건 특징

솔벤시 II는 보험회사가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모두 경영성과에서 경영환경, 영업성과 및 영업외성과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

40) Alternative Risk Transfer.

지만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 보고 내용과 공시 내용 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정기보고에서는 보험회사가 경영 계획 기간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정기공시에서는 해당 회계연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에서는 보험회사가 경영 목적 및 경영전략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정기공시의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기보고에서는 보험회사가 경영성과에 대한 내부분석, 계획 대비 성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정기공시의 경우에는 경영성과만을 공시하여야 한다.

〈표 IV-1〉 경영성과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경영일반 및 외부환경	비즈니스/외부 환경 특징 (비즈니스 계획 기간 내, 장래 추세 및 요인 포함)	보험회사 일반 정보 비즈니스/외부 환경 특징, 중요 사건(당년도)
목적 및 전략	재무적/비재무적 목적, 경영전략/리스크전략 요약, 전략 변화, 비즈니스 계획 기간	-
보험영업성과	보험종목별/지역별 성과(내부 분석, 계획 대비 성과, 보험영업비용, 장래 중요 요인, 재보험 등)	보험종목별/지역별 성과(전년도와 비교), 그룹 내부 거래
투자영업성과	투자자산그룹별 성과(내부 분석), 투자영업비용, 주요 가정	투자자산별 성과, 유가증권 손익, 내부거래 및 배당, 유무형자산/금융자산 상각 및 손상, 당기 보험영업외 수익 및 비용
영업외성과	내부 분석, 장래 영업외 수익 및 비용(예: 구조조정 및 운영비용)	수익 및 비용별 구분 (예: 관리비, 급여, 세금 등) 중개활동, 인소싱 및 기타 보험외 활동 등의 손익

경영성과에 대한 이와 같은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요건들은 IASB의 “경영진 설명서(Management Commentary)”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 경영진설명서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인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 체계”<sup>41)</sup>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제공한다. 경영진설명서는 재무제표에 제공되지 않은 기업의 전망과 기타 정보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또한 경영진설명서는 경영진의 목표와 그 목표 달성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sup>42)</sup>

또한 이 경영진설명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서술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격
- 경영진의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 기업에게 가장 유의적인 자원, 위험 및 관계
- 영업과 전망의 결과
- 명시된 목표와 비교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용하는 중요한 성과 측정치와 지표

IASB는 이 경영진설명서를 독일의 “경영진보고서”(Management Report, 이하 MR)<sup>43)</sup>, 영국의 “영업과 재무검토”(Operational and Financial Review, 이하 OFR), 미국의 “경영진 논의와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이하 MD&A) 등을 토대로 제정하였다.<sup>44)</sup>

참고로 경영성과에 대한 정기공시 요건과 영국의 OFR 요건을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영국의 OFR보다 투자영업성과 및 보험영업성과 관련 질적 정보를 추가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표 IV-2〉 참조).

41) 경영진설명서는 광범위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개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이다. 즉, 경영진설명서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다.

42) IASB(2010), p. 7.

43) 뮌헨재보험회사는 경영진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또한 경영진보고서는 경영환경 및 성과, 재무상태, 기타 성공요인, 지배구조, 리스크 보고서, 전망 등을 연차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다(뮌헨재보험회사, <http://www.munichre.com> 참조).

44) IASB(2005), pp. 82~89.

〈표 IV-2〉 솔벤시 II의 보고·공시와 영국 간 비교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시스템 기준)

조항	솔벤시 II	영국 (OFR 및 지배구조 규범)	추가 공시 요건
경영성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영업성과</li> <li>• 보험영업성과</li> </ul>
지배구조 시스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채용 절차 개요</li> <li>• 계리기능 및 대표계리사 역할</li> <li>• 핵심 및 중요 기능·활동에 대한 아웃소싱 개요</li> </ul>

자료: Deloitte(2009), p. 11.

솔벤시 II의 경영성과 관련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요건들은 우리나라 기업공시기준의 경영진단의견서와 유사하다. 경영진단의견서는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대한 분석,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에 관한 분석, 부외거래에 대한 분석,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환경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서술하여야 한다.<sup>45)</sup> 이는 우리나라 경영진단의견서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경영진설명서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와 비교하면 솔벤시 II의 정기공시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환경, 경쟁지위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업의 성격, 경영진의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기업에게 가장 유의적인 자원·위험·관계, 영업과 전망의 결과, 경영진이 사용하는 중요한 성과 측정치와 지표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보고서와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와 달리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요건을 상세하게 권고하고 있다(〈부록 1〉 참조).

45) 금융감독원(2010), pp. 43~44.

## 나. 지배구조(systems of governance)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업무활동을 균형감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회사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 회사의 주요 업무 활동과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회사의 효율성과 전반적인 강점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 경제여건 또는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반응 등을 평가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에게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이사회 조직, 고위 경영진 조직 및 기본조직 구조에 관한 정보,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자격조건과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총급여, 성과급 상여금 및 주식옵션 등의 보상방침을 포함한 유인 제도에 관한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들은 경영진 및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리스크를 선호하게 하는지 여부를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들이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평가에는 집행간부 및 일반직원의 급여에 관한 철학 및 방침에 관한 요약 검토자료, 급여결정에 관한 이사회역의 역할 등에 관한 정보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에게 자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성격과 동 거래규모에 관한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들은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들이 자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이 정보는 자회사가 보험회사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 및 통제를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방침에 관한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이 중 리스크관리 정보는 보

험회사의 미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 및 경영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정보에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철학과 방침 및 방법론, 리스크 발생이유 및 경위,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방법, 리스크관리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여부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리스크 관리구조와 리스크의 측정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 및 모형의 유효성 확인 방법, 리스크 완화수단, 한도설정, 익스포져 정기검사 등에 관한 검토에 유용한 정보이다.

감독당국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방법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회사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리스크 관리 통제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속적으로 이용되어온 리스크 관리기법 및 대책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IOPA는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솔벤시 지침 제41조~제48조 등에서 지배구조 일반, 적격성, 리스크관리시스템, ORSA, 내부통제, 내부감사기능, 계리 기능, 아웃소싱 등의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시 요건과 보고 요건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다.

## 1) 지배구조 공시 요건

### 가) 지배구조 일반 공시

보험회사는 지배구조 일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한 정보
- 지배구조관련 당 회계연도 내 중요한 변화
- 지배구조 관련 조직
  - 관리기구 · 경영기구 · 감사기구의 주요 기능 및 책임, 위원회(예: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책임
- 그룹 지배구조(그룹 내 보험회사)
- 지배구조 관련 조직의 보상 정책 평가방법(보상과 리스크 간 관계 포함)

- 보상 정책과 리스크 관리 간의 연계를 보증하는 통제수단

보험회사는 이와 더불어 외부 정보이용자가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상 정책의 원칙(특히 보상과 성과 간 연계 관련 충분한 정보)
- 보상 관련 고정변수 및 변동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 주식 옵션권, 주식 또는 변수 요소 기반의 성과평가기준

또한 관리기구·경영기구·감독기구 또는 최고경영진을 위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 제도의 주요 특징을 공시하여야 한다.

#### 나) 적격성 공시(Fit and proper)

보험회사는 적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경영진 및 주요 기능 담당자에 대한 프로세스
- 경영진 및 주요 기능 담당자 관련 최소 자격 요건(예: 전문지식 및 경험)

#### 다) 리스크관리시스템 공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조 및 조직
- 리스크 한도 준수를 위한 리스크 전략 및 정책
- 개별적·통합적 및 상호의존적 관점의 리스크 인식·측정·모니터링·관리·보고 방법
- 중요한 기타 리스크 관리(예: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전염리스크, 부외거래리스크)
- 자산·부채 관리 절차

- 관리기구·경영기구·감사기구의 보고(경영정보의 범위, 보고 빈도, 보고 요건 등)
- (그룹 내 보험회사) 개별회사 기준의 그룹 특성
  -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 차원의 장치
  - 그룹 내 아웃소싱(긴급하거나 중요한 운영상 기능 및 활동)

라) ORSA 공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일부인 ORSA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ORSA 요건에 대해 EIOPA는 직면하고 있는 환경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ORSA를 실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즉, EIOPA는 ORSA 보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EIOPA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ORSA 공시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ORSA 프로세스와 경영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체계 간 통합 방법
- ORSA 정기 검토 방법, 그리고 관리기구·경영기구·감사기구의 승인 여부
- 지급여력 니즈를 결정하는 방법
- 자본관리 활동에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고려하는 방법
- ORSA 프로세스 및 결과의 입증, 내부 문서화 및 독립적 재검토 방법

마) 내부통제 공시

보험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측면에서 현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적시에 재무보고할 수 있는 보험회사 내 관리 및 결산 절차
- 내부 통제 시스템 내 책임, 보고체계 및 권한 구분의 분명한 위임에 대한 요건을 처리하는 방법

- 준법 활동 방법(관리기구·경영기구·감사기구에 대한 준법부문의 조언 방법 포함)
- 데이터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체크 프로세스 포함)

#### 바) 내부감사기능 공시

보험회사는 내부감사기능의 활동을 서술하여야 한다. 이 공시 정보에는 내부감사기능이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하여 적절성 및 효율성에 관해 확신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사) 계리기능 및 아웃소싱 공시

보험회사는 계리기능에 대해 서술하여야 하며, 그리고 계리기능이 책임지는 주요 부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리기능이 객관적이고, 다른 기능 또는 관리기구·경영기구·감사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증하는 방법을 서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중요한 운영 기능 및 활동을 아웃소싱한 경우 이를 개략적 서술하고, 아웃소싱한 이유를 서술하여야 한다. 이 공시 정보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 서비스 제공자와 그룹 간 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지배구조 보고 요건

### 가) 지배구조 일반 보고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지배구조의 유효성, 조직구조, 문서화된 정책, 지배구조위원회 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은 신상품, 신규 보험종목, 신규 투자수단 등과 관련한 지배구조 프로세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보고 요

건을 권고하고 있다.

-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내부감사 및 아웃소싱에 대한 정책이 경영전략과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 주주와의 거래, 관리기구·경영기구·감사기구 내 임직원과의 거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 감사 세부 내용 및 감사 진전 내용

#### 나) 적격성 보고

보험회사는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세스와 문서화된 절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이를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주요 담당자들이 경험 있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계리 기능 담당자가 준비금 계상 방법 및 모형 구축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적격성 관련 보고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 솔벤시 II 지침 제42조와 관련한 사람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증하는 정책 및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정보
- 솔벤시 II 지침 제42조와 관련한 자들에 대한 리스크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 다) 리스크관리시스템 보고

보험회사는 강건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또는 잠재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 모니터, 경감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리스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

고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이해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와 다른 유사한 회사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리스크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 리스크 인식, 측정, 관리, 모니터 및 보고하는 프로세스
- 리스크 모듈을 위한 보험회사의 목적 및 정책
- 관리기구·경영기구·감사기구의 내부 보고 정보(경영정보,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증빙자료)

EIOPA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관련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험회사는 분명하게 문서화된 리스크 기준을 모니터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
- 리스크 관리 목적 및 정책에 대한 세부적 내용(예: 가격규율,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보험 사이클 관리정책, 투자수익, 클레임 프로세스)
- 리스크 관리 시스템 책임자 및 담당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
-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

#### 라) ORSA 보고

보험회사는 ORSA 프로세스 및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 지급여력 니즈, 노출된 중요 리스크, 요구자본과 ORSA 결과 비교, 자본관리와 통합된 리스크관리 등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감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유사한 특징 및 규모를 지닌 보험회사들의 자본 및 리스크 관리를 비교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ORSA 관련 보고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 ORSA 결과(제 가정 및 장래 지급여력 니즈 포함)
- 현재 및 미래 익스포저에 대한 상세 정보(부외 거래 포함)
- 요구자본과 내부 지급여력 니즈 간 비교
- 표준모형 미반영 리스크에 대한 정보
- ORSA 내 전략 감안 방법
- (그룹 내 회사) 그룹 전략 감안 방법

#### 마) 내부통제 보고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이 내부통제 시스템은 비즈니스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최소한 관리 및 회계 절차, 데이터 처리, 내부통제 체계, 장기 전략을 지지하는 적절한 급여체계, 적절한 보고 체계 및 준법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에게 보증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관련 보고 요건을 권고하였다.

- 재무상태를 반영한 감독목적 재무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관리 및 회계 절차
- 내부 통제 체계, 위임전결, 보고체계, 업무분장, 적정성·접근성·보유기간·기록보안 측면에서 책임 이행 방법
- 관리기구·경영기구·감독기구의 보고 계획  
(감독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인식·측정·관리·통제 기능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적시에 제공하는 보고계획)
- 관리기구·경영기구·감독기구가 승인한 비상계획

EIOPA는 준법기능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준법 기능의 필요 권한, 자원, 전문지식, 정보접근

- 준법기능과 관련 임직원
- 관리기구·경영기구·감독기구의 준법 관련 권고

#### 바) 내부감사기능 보고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효율적인 상설 감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감사기능 관련 보고 요건을 권고하였다.

- 내부 통제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법
-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 방법
- 내부 활동의 준법성에 대한 내부감사 방법
- 기간 내 회계감사 결과 요약 및 장래 회계감사 계획
- 관리기구·경영기구·감독기구에 보고된 내용(요약)
- 직전 보고일 이후 내부감사활동을 통해 인지된 통제체계 개선 행위 및 리스크 경감 행위에 대한 증거

#### 사) 계리기능 및 아웃소싱 보고

보험회사는 계리부문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계리기능에 대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계리기능 관련 보고 요건으로 권고하였다.

-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일치시키는 행위
- 책임준비금 계상방법, 사용된 모형 및 제 가정에 대한 적합성 보장 행위
- 책임준비금 계상에 사용된 자료의 충분성 및 질을 평가하는 행위
- 최선 추정치와 경험을 비교하는 행위
- 관리기구, 경영기구 또는 감독기구에 책임준비금 계상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책임준비금 계상을 감독하는 행위(솔벤시 II 지침 제 82조 관련)
- 보험가격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재보험 계약의 타당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리스크관리시스템 완성 관련 행위
  - 특히, 요구자본의 계상 및 리스크 모형 완성 관련 행위

보험회사는 아웃소싱 및 안전장치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아웃소싱 기능이 중요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관계사 아웃소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적절한 감독 및 안전장치 관련 증거
  - (보험회사는 아웃소싱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님)
- 비상계획 일환으로서의 아웃소싱 계획 평가 방법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평가하는 방법
- 지배구조 시스템의 질을 손상시키는 않는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방법
- 운영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ORSA 포함)

### 3) 지배구조 관련 공시 및 보고 요건 특징

솔벤시 II의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는 모두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지배구조 일반, 적격성, 리스크관리시스템, ORSA, 내부통제, 내부감사기능, 계리기능, 아웃소싱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솔벤시 II는 제도의 목적을 감안하여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보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IV-3〉 지배구조 관련 공시 요건 및 보고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지배구조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공시 정보 + 추가 정보</li> <li>추가정보: 지배구조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계성 입증, 주주와의 거래 및 내부 거래에 대한 정보,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 개요(시스템, 변화)</li> <li>급여정책(원칙, 보수 결정 요인, 성과평가기준)</li> </ul>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성 정책과 프로세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프로세스, 최소 자격 요건</li> </ul>
리스크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정보 (리스크별 목적 및 정책, 의사결정 정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의 구조/조직 개요, 리스크 전략/정책 개요, 표준모형 미포함 리스크 관리, 내부보고 범위/빈도/요건</li> </ul>
OR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RSA 세부 정보 (결과, 현재/미래 익스포져, 결과 비교, 표준모형 미반영 리스크, 전략 반영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세스, 통합방법, 정기검토 여부, 승인여부, 지급여력 니즈 결정 방법, 결과·프로세스 입증·문서화·재검토 방법</li> </ul>
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정보 (기록 유지 및 보안, 보고 계획, 비상계획, 준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개요, 판단이유, 관리·결산 절차, 위임전결 처리방법, 준법기능, 데이터 질 확보 방법 (체크 프로세스 포함)</li> </ul>
내부감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전략 준수 모니터 방법, 감사 계획, 감사결과 및 감사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사항, 독립성/객관성 유지 방법</li> </ul>
계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리기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 범위, 이행 방법, 객관성/독립성 유지 방법</li> </ul>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 및 안전장치, 비상 계획 내 고려 대상, 서비스 제공자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웃 소싱 개요 및 이유</li> </ul>

예를 들어 지배구조 일반의 경우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와 달리 지배구조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계성 입증, 주주와의 거래 및 내부 거래에 대한 정보,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 등이 서술되어야 한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경우 정기보고에서는 리스크별 목적 및 정책, 의사결정 정보 등의 시스템 정보가 보다 세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ORSA의 경우에는 정기보고에서는 현재/미래 익스포져, 결과 비교, 표준모형 미반영 리스크, 전략 반영 방법 등이 보다 세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한편, 영국의 OFR 및 지배구조규범과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정기공시에서 임

직원 채용 절차, 계리기능 및 대표계리사 역할, 핵심 및 중요 기능·활동에 대한 아웃소싱 등과 관련한 질적 정보를 추가로 서술하여야 한다(〈표 IV-2〉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와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채택하지 않은 ORSA 및 내부모형과 관련한 질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배구조 전반, 리스크관리시스템 전반, 계리기능 및 대표계리사 역할, 핵심 및 중요 기능·활동에 대한 아웃소싱 등과 관련한 질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업보고서와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지배구조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보고 및 공시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 2.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산·부채 평가

### 가.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부이용자는 재무적 의사 결정을 위해 리스크와 수익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먼저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이해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 익스포저의 성격과 크기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이 경쟁의 증대 및 기술 혁신으로 급격히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기반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리스크 익스포저를 이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미래 현금흐름의 규모,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들이 보험회사의 재무능력, 생존 가능성 및 궁극적인 영업 지속능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에게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및 리스크 익스포저별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전략을 포함하여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리스크 익스포저의 성격 및 크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감독당국 등이 익스포져 추세를 전망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과거연도의 정보도 함께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감독당국등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법규 및 전략 리스크와 같은 기타 리스크의 경우 익스포져 측정이 쉽지 않은 반면에 매우 목적적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리스크의 성격과 관리방법에 대한 질적인 정보도 함께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리스크 측면에서는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기타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먼저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게 선관주의 원칙(prudent person principle)하에서 자산을 투자하였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보고 또는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동성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만기분석 포함)에 대한 서술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타리스크에 대해서는 표준모형 또는 내부모형에 반영하지 않는 중요 리스크(예: 집중리스크, 재보험/경감 리스크, 부외거래관련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관련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부외거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리스크 경감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파생상품 및 유사한 금융상품 관련 리스크 정보
- 부외거래 계약(예: SPV) 관련 리스크 정보<sup>46)</sup>
- 특수목적기구 관련 전가된 리스크, 자금조달 규모 및 재무적 이해관계(특수목적기구의 유가증권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정보
- 특수목적기구의 자금조달방법에 관한 정보

46) 완전 공시는 특수목적기구(SPV)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특수목적기구 관련 전가된 채무, 불인정된 다른 특수목적기구와 관련된 유가증권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정보
- 리스크의 집중 관련 리스크와 리스크 한도 요건 충족 방법에 관한 정보

그리고 EIOP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스크 범주별로 리스크 익스포져·집중·경감·민감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공시 요건과 보고 요건을 권고하고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게 있다.

### 1) 리스크 프로파일 공시 요건

#### 가) 리스크 익스포져 공시

보험회사는 리스크 익스포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사용된 리스크 평가 수단의 특징에 대한 정보(익스포져 변화 포함)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 시스템, 통제 및 지배구조 맥락에서의 질적 수단 정보
- 보고기간 말 양적 데이터가 보고기간 내 리스크 익스포져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리스크 익스포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리스크 익스포져의 특징, 과거 경험에 대한 정보
- 리스크 익스포져의 결정요인 및 변화, 그리고 지급여력 영향
- 관리 중인 리스크 상품 및 투자 그룹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특히, 파생상품 및 구조화 상품)
- 운영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아웃소싱 계약관련 운영리스크 포함)
- 그룹 리스크에 대한 정보(예: 전략리스크, 집중리스크, 평판리스크)
- 그룹 분산 효과 및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그룹 내 회사에 미치는 영향 포함)

### 나) 리스크 집중 공시

보험회사는 리스크 집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리스크 집중의 유형, 리스크별 집중 유형별 표시(자산·부채 모두 해당)
- 양적 정보 관련 사용 방법 및 제 가정
- 경영진의 집중 결정 방법(관련성, 전염 분석 포함)
- 보험리스크의 집중(예: 단체생명보험리스크: 피보험자 수, 손해보험: 최대 손실/예상손해)

### 다) 리스크 경감 수단 공시

보험회사는 리스크 경감 수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리스크 경감 방법
- 리스크 경감 효과 관리 절차
- 익스포져 통제를 위한 재보험 또는 기타 리스크 전가 방법의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 라) 리스크 민감도 공시

보험회사는 리스크 민감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변화와 지급여력 관련 리스크 민감도에 관한 정보
- 위기상황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정보
- 민감도 분석 관련 정보
  - 리스크 프로파일 및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
  - 민감도 분석 방법 및 제 가정
  - 직전 회계연도 결과와 비교(변경된 방법 및 가정, 변경이유)

## 2) 리스크 프로파일 보고 요건

### 가) 리스크 익스포저 보고

보험회사는 리스크 익스포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내부 조직의 기대에 대한 상세 정보(신리스크 인지 절차 포함)
-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방법
- 경영 목적과 리스크 한도
- 리스크 감내 방법
- 금융상품의 리스크 특성 및 정도 평가 관련 상세 정보(직전 보고일 이후 중요 변화 포함)
- 부외거래의 현재 및 미래 리스크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리스크의 지급여력 니즈 반영 방법에 대한 정보
- 리스크 경감,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 보험회사의 전략 등을 위해 사용된 파생상품 및 유사 금융상품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
- 운영리스크의 경우, 총운영손실 규모, 사고건수, 운영사고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 분류 · 집계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손실 실적과 가용자본의 비교 등에 대한 세부 정보
- 금융상품 관련 모든 리스크의 익스포저에 관한 양적 정보(경영진 보고 정보와 일치)

### 나) 리스크 집중 보고

보험회사는 리스크 집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상되는 장래 리스크 집중에 대한 세부 정보
-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

#### 다) 리스크 경감 수단 보고

보험회사는 리스크 경감 수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용한 리스크 경감 전략과 효과 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
- 사용한 리스크 경감 방법 및 리스크 프로파일의 효과에 대한 세부 정보  
(예: 재보험, 금융재보험의 담보 및 타당성에 대한 세부 정보, 보험회사의 리스크 경감 정책(재보험자 선택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리스크 전략 측면에서 범위, 우선순위, 타당성), 이 담보를 획득한 방법)
-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될 장래 리스크 경감 실무에 대한 상세 정보
  - 담보(금융)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 정상 매각 시 담보 재설정이 가능한 경우 보유 담보의 공정가치, 매각 또는 재설정된 담보의 공정가치, 보험회사 또는 그룹의 채무 현황, 담보 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한 상세 정보
- 보유 담보로 인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
  - 자산의 특성 및 차기이월 규모
  - 즉각적인 현금전환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운영 관련 원칙

#### 라) 리스크 민감도 보고

보험회사는 리스크 민감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리스크 민감도 분석에 대한 상세 정보
- 공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미공시 이유 및 민감도 관찰방법

### 3)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 공시 및 보고 요건 특징

솔벤시 II는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모두 리스크 범주별로 리스크 익스포져·집중·경감·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와 비교하여 보다 상세하게 리스크 익스포져·집중·경감·민감도 보고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기보고에서는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IV-4〉 리스크 프로파일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보험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별 익스포져, 집중, 경감, 민감도: 보다 상세 서술 (장래 리스크 포함)</li> <li>• 추가 보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스포져: 비즈니스 전략에 따른 진전 새로운 리스크 인지 프로세스, 익스포져 관리 방법, 리스크 감내 방법, 부외거래관련 리스크(현재/미래), 파생 관련 리스크</li> <li>- 집중: 장래 리스크 집중</li> <li>- 경감: 전략 및 모니터 프로세스, 경감정책 및 실행 방법</li> <li>- 민감도: 세부 정보, 미공시 이유, 모니터 방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별 익스포져, 집중, 경감, 민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스포져: 평가방법 특징, 비계량화 리스크 관리 개요, 익스포져 특징 및 과거 경험, 익스포져 결정요인의 변화 및 지급여력 포지션 영향, 운영리스크 관리 방법, 그룹관련 리스크, 그룹 분산효과 및 주요 원천</li> <li>- 집중: 유형, 현황, 양적 정보 산출방법 및 가정, 보험리스크 집중 현황</li> <li>- 경감: 방법, 효과 모니터 절차, 활용 여부 및 사용 방법</li> <li>- 민감도: 분석 방법 및 제 가정, 변경사항, 변경이유</li> </ul> </li> <li>• 시장리스크: 선관주의 적용방법</li> <li>•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단기분석 등)</li> <li>• 기타리스크: 파생상품관련 주요 리스크 (경감 및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 부외거래 관련리스크</li> </ul>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기타 리스크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정기보고에서 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해 경영전략에 따른 진전, 새로운 리스크 인지 프로세스, 익스포져 관리 방법, 리스크 감내 방법, 부외거래관련 리스크(현재/미래) 등을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장래 리스크 집중, 전략 및 모니터 프로세스, 경감 방법 및 효과, 경감 정책 및 실행방

법, 미공시 이유 및 모니터 방법 등을 서술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예: IFRS 4 및 IFRS 7)과 비교하면, 슬벤시 II의 정기공시는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운영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 ALM 리스크, 평판리스크 등과 관련한 질적 정보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 경감 방법과 관련한 질적 정보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5〉 슬벤시II의 정기공시와 국제회계기준의 재무공시 비교

구분	슬벤시 II	국제회계 기준	추가 공시 요건	비고(현행 기준서)
리스크 관리	○	○	- 운영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 ALM 리스크, 평판리스크 - 리스크 경감 방법	IFRS 7(금융상품: 공시) 및 IFRS 4(보험계약) <sup>47)</sup>
자산·부채 평가	○	○	- 선관주의 입증	IFRS 7 및 IFRS 4
자본관리	○	○	- 장래 자본 수준 및 확충 계획	IAS 1(재무제표: 표시) 및 FR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자료: Deloitte(2009),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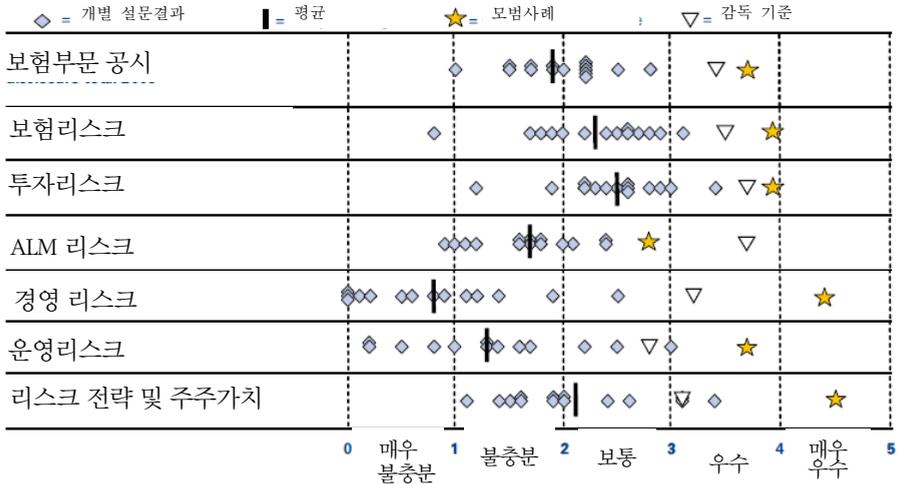
또한 슬벤시 II는 현행 공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리스크 프로파일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KPMG(2008)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47) IFRS 7(금융상품 공시) 및 IFRS 4(보험계약)의 주요 공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IFRS 7(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 노출 위험의 성격, 정도 및 관리방법
  - 질적 공시: (위험별) 위험 노출정도와 노출정도의 발생 형태,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변동 내용
  - 양적 공시: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 최대 노출정도, 담보 및 신용 보강의 내용, 금융자산의 만기분석, 손상 금융자산 분석, 비파생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의 만기분석, 유동성위험 관리방법,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 및 분석 한계
- ② IFRS 4(보험계약)
  -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공시
    - 회계원칙,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요 가정 및 가정 변경
  - 장래 현금흐름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 리스크관리 목적과 보험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
    - 보험계약의 조건, 보험리스크, 이자율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 내재파생상품의 이자율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

IV-1) 참조). 이에 따르면 솔벤시 II는 보험회사들의 평균적인 공시 수준을 상회하게 모범사례 및 감독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현상은 보험리스크, 투자리스크, ALM 리스크, 운영리스크, 경영리스크 등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 보험회사의 공시 수준, 공시 모범사례 및 공시 감독기준



자료: KPMG(2008), p. 14.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와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모든 리스크를 대상으로 리스크 집중, 민감도 분석 등에 대한 공시 요건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는 시장리스크에 한정하여 민감도분석을 적용하고 있으나, 솔벤시 II의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는 리스크 프로파일 에 포함된 모든 리스크에 민감도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경영통일공시는 리스크 집중을 재보험에 한정하고 있으나, 솔벤시 II의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는 민감도분석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집중을 모든 리스크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솔벤시 II의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는 비계량화 리스크 관리 개요, 익스포져 특징 및 과거 경험, 익스포져 결정요인의 변화 및 지급여력 포지션 영향 등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자산·부채 평가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재무건전성 감독 또는 재무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당보험회사에서 적용하고 자산 및 부채 관련 회계방침을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계방침, 관행 및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 관련 회계 방침을 이해하여야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의 평가관련 회계방침을 적절히 공시 또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회계준칙, 회계방침 및 관행의 변경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기타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부실자산 결정방침과 결정방식, 부실자산에 대한 수익과 무수익여신에 대한 손실의 인식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방침, 유가증권, 대출금, 고정자산, 부채 등의 평가에 관한 방침,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 및 인식의 취소에 관한 방침, 그리고 자산의 증권화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 회계처리 등을 공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원천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부외거래와 관련한 명목금액, 공정시장가격 및 대체가격, 약정 및 우발채무에 대한 정보사항 등을 공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EIOPA도 이를 감안하여 지급여력 목적을 반영한 자산 및 부채 평가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EIOPA는 지급여력 목적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 함께 재무회계 목적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의 차이에 관한 양적 및 질적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 또는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룹에 소속된 보험회사에 대해 개별 회사에 적용된 평가방법이 그룹 전체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 또는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EIOPA는 자산 및 부채 평가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자산, 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에 대하여 세부적인 공시 및 보고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EIOPA는 이와 관련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 회계방침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시 요건과 보고 요건을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 1) 자산·부채 평가 공시 요건

### 가) 자산 평가 공시

보험회사는 자산(투자자산 포함)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지급여력 목적과 재무보고 목적 간 자산평가 기준, 방법 및 가정의 차이 (양적, 질적)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구조화 상품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그리고 지급여력 목적으로 사용된 평가 기준·방법을 서술
- 공정가치 공시의 경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유형별로 구분
- 금융상품을 서술하고, 또한 경제적 가치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서술
-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그룹별로 적용된 공정가치 결정 방법 및 제 가정을 서술
- 만약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를 서술

### 나) 책임준비금 평가 공시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지급여력 목적 하의 책임준비금 규모에 대한 정보 (최선추정치와 리스크 마진 구분, 종목별 구분)
- 책임준비금 결정액과 함께 보험부채의 측정 및 재무정보의 진전 관련 주요 가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예: 할인율, 사업비, 장래 마진, 사망률, 법인세 가정, 배당 특징, 보증 및 옵션, 경영행위의 효과, 계약자 행동, 물가상승률, 손해진전 패턴 등)

- 책임준비금을 단순 방법으로 계상한 경우 이 방법을 적절하다고 인식한 이유  
- 추정치가 좁은 범위 또는 넓은 범위에 포함되는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수준과 불확실성의 수준을 표시

- 직전 보고 이후 책임준비금 수준의 변화, 현행 지급준비금의 진전 형태, 장래 발생할 신규 지급준비금, 당년도 지급준비금, 해약률의 변화, 신계약 증가 등의 변화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 계상 가정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최근 경험하고 있는 변화 양상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

- 리스크 그룹별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 평가에서의 재보험 영향

(재보험 반영 책임준비금 규모, 재보험 미반영 책임준비금 규모)

- 책임준비금 계상 시 장래보험료 반영방법

-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와 지급여력 목적의 평가 간 차이에 대한 정보(양적 및 질적)

-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리스크 그룹 보험종목별 경영행위 및 계약자 행동에 대한 정보

#### 다) 기타 부채 평가 공시

보험회사는 기타 부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기타 부채의 평가 기준 및 제 가정(자기자본 관련 후순위채무 제외)

-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와 지급여력 목적의 평가 간 차이(양적, 질적)

## 2) 자산·부채 평가 관련 보고 요건

보험회사는 자산(투자자산 포함), 책임준비금, 기타 부채 등의 평가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밀로 인식하고 있는 자산, 책임준비금 및 기타부채
- 미공시 정보 관련 감독당국과의 협의 내용

### 3) 자산·부채 평가 관련 공시 및 보고 요건 특징

솔벤시 II는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모두에서 자산, 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 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와 달리 보험회사의 기밀정보와 감독당국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기밀로 간주되는 자산, 책임준비금 및 기타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공시하지 않는 정보와 감독당국과 협의한 내용을 감독당국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표 IV-6〉 자산 및 부채 평가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 및 방법</li> <li>• 기밀 정보 포함</li> <li>•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평가 기준·방법·가정 차이(감독회계와 재무회계, 양적/질적)</li> <li>• 구조화상품 개요, 지급여력 목적 평가 기준 및 방법</li> <li>• 금융상품 경제적 가치 결정방법</li> <li>•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 방법 및 제가정 평가방법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li> </ul>
책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준비금 규모(리스크 마진 구분, 종목별 구분), 종목별 리스크별 측정방법 및 제 가정, 단순방법 적용이유, 책임준비금 수준의 변화, 재보험 영향, 장래 보험료 처리방법, 경영행동·계약자행동</li> </ul>
기타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기준 및 제 가정, 평가 기준·방법·가정 차이(감독회계와 재무회계, 양적/질적)</li> </ul>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하면, 솔벤시 II는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적용한 선관주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표 IV-5〉 참조).

### 3. 자본관리 및 내부모형

#### 가.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분석에 가용자본 규모 및 구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는 장래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과 가까운 장래의 성장 여력을 평가하는데 자본금의 규모와 유형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에서는 회사 내 자본관리와 리스크관리 기능과의 관계가 서술되어야 한다. 또한 직전 보고일 이후 변화를 포함하여 사용된 계획기간 및 적용한 자본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어야 한다.

EIOPA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용자본의 구조·규모·질, 요구자본, 요구자본 계상관련 보험회사의 선택권,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차이, 요구자본 요건 위반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시 요건과 보고 요건을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 1) 자본관리 공시 요건

##### 가) 가용자본의 구조, 규모 및 질 공시

보험회사는 가용자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가용자본 관리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가용자본의 구조에 대한 정보(종류별 규모 및 질에 대한 정보 포함)
  - 솔벤시 II 지침 제93조 및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용자본의 양적 및 질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
- 보완자본 관련 다음과 같은 정보
  - 보완자본별 규모 및 특성

- 보완자본별 거래상대방의 명칭(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 그룹에 대한 서술(소액주주지분 관련)
- 거래상대방의 동일 그룹 관련 내용을 서술
- 가용자본의 규모 결정 방법
- 보고일 이후 가용자본의 변화 분석<sup>48)</sup>
- 가용자본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예: 담보제공 또는 미지급 배당금)
- 그룹 가용자본의 규모와 질에 대한 정보(기준, 이용가능성, 대체성 및 전가성)

#### 나) 감독요구자본 공시

보험회사는 감독요구자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리스크별 요구자본(MCR 및 SCR) 계상에 대한 질적 정보<sup>49)</sup>
- 보험회사 경험실적 사용 모듈과 사용 이유
- 보고일 이후 요구자본 수준의 변화와 변화 이유<sup>50)</sup>
- 자본 확충 내용과 감독당국의 정당성에 대한 정보
- 그룹 관련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서술
  - 그룹 전체 부분 또는 내부모형 사용
  - 그룹 및 회사 차원의 내부모형 내 그룹 경험실적 사용
- 그룹 요구자본에 대한 정보
  - 그룹 내부모형에 포함된 보험회사에 대하여 서술
  - 분산효과에 대한 정보
  - 적정 그룹 자기자본을 유지하는 요건

48) 만약 요구자본 또는 자기자본의 변화가 보험회사 지급여력 상태를 악화시키는 전조가 된다면 이 분석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49) 보험회사가 어떤 모형(예: 표준모형, 부분내부모형 또는 완전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표준모형에서 보험회사 경험실적(undertaking specific parameters)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50) 최소한 신규계약, 보유계약의 변동 그리고 보험회사 경험실적의 영향 또는 당년도 내부모형 승인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관계사별 최저요구자본(MCR) 합산 값
- 그룹 자본 확충에 대한 정보(개별 회사의 자본 확충 포함)

#### 다) 요구자본 계상관련 보험회사의 선택권(지침 제304조) 공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계상과 관련하여 선택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모형에서의 주식리스크 요구자본 계상방법에 대한 정보
  - 표준모형에서 사용한 주식 요구자본 규모에 대한 정보
  - 주식 요구자본 규모를 계상한 방법에 대한 정보
- 그룹 표준모형에서의 주식리스크 요구자본 계상방법에 대한 정보

#### 라)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 공시

보험회사는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제 가정의 차이를 서술  
(표준모형의 제 가정 변경에 대한 정당성 포함)
- 그룹의 내부모형과 자회사의 내부모형 간 차이를 서술(양적 및 질적)

#### 마) 감독요구자본 요건 위반 공시

보험회사는 감독요구자본 요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요구자본 요건 위반을 서술(원인, 결과, 대응계획)
- 보고기간 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구자본 규모
  - 보고기간 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최대 요구자본 규모
  - 보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요구자본 규모

- 요건 위반 기간 또는 시점
- 대응수단의 효과(예: MCR/SCR 추후 변화)와 대응수단의 영구성을 서술
- 그룹 내 보험회사는 그룹 요구자본 요건 위반을 간략하게 서술(규모, 원인, 결과, 대응계획)

## 2) 자본관리 보고 요건

### 가) 가용자본의 구조, 규모 및 질 보고

보험회사는 가용자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용자본 구조를 서술(범주별 주요 특징(기간 및 조건) 포함)
- 경영 계획 기간 내 가용자본 수준에 대한 전망을 서술  
(위기상황 시 자본계획 등)

### 나) 감독요구자본 보고

보험회사는 감독요구자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공시 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서술
  - 경영 계획 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
  - 요구자본 계상 시 사용한 리스크 경감 방법 및 관리 행위에 대한 세부 정보
  - 리스크 경감 방법 및 관리행위의 승인요건을 충족시킨 방법

### 다) 요구자본 계상관련 보험회사의 선택권 보고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계상과 관련하여 선택권 행사에 따른 요구자본 효과를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 보고

보험회사는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와 관련하여 내부모형의 승인을 받은 이후 보험회사는 표준모형으로 계상한 요구자본 추정치를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감독요구자본(SCR 및 MCR) 요건 위반 보고 요건

보험회사는 감독요구자본 요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미공시 사항에 대한 감독자와의 협의 내용
- 자본요건의 충족을 위한 유지 계획

## 3) 자본관리 관련 공시 및 보고 요건 특징

솔벤시 II는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모두 가용자본의 구조·규모·질, 요구자본,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 요구자본 요건 위반 등을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정기보고에서는 정기공시와는 달리 비상계획 관련 가용자본 수준, 계획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용자본의 구조(기간 및 조건 포함) 및 비상계획 관련 가용자본의 수준을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보고에서는 계획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 리스크 경감 방법 및 관리 행위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표 IV-7〉 자본관리 관련 보고 요건 및 공시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가용자본의 구조, 양 및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용자본의 구조 (기간 및 조건 포함)</li> <li>비상계획하 가용자본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용자본 관리 목적, 정책, 프로세스</li> <li>가용자본의 구조, 자기자본 종류별 양 및 질</li> <li>신종자본증권의 양적 및 질적 기준 충족 방법</li> <li>보완자본별 규모, 특성, 결정방법</li> <li>보고일 이후 자기자본 변화,</li> <li>가용자본의 가용성 정보(예: 담보제공 등)</li> </ul>
요구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기간 내 요구자본 수준</li> <li>리스크 경감 방법 및 관리 행위</li> <li>승인요건 충족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크별 질적 정보, 적용모형, 경험 실적 사용 모듈 및 사용 이유, 보고일 이후 요구자본 수준 변화 이유, 자본 확충</li> </ul>
보험회사의 선택권(요구자본 계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옵션 선택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리스크 모듈 계상방법</li> </ul>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모형 요구자본 추정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가정의 차이(변경 정당성 포함)</li> </ul>
요구자본 요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공시 사항에 대한 감독자 협의 내용</li> <li>요건 충족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인, 결과, 대응계획</li> <li>보고기간 내 및 보고일 기준 요구자본 요건 위반 규모</li> <li>대응수단의 효과 및 영구성</li> </ul>

한편, Deloitte(2009)에 따르면 솔벤시 II의 정기공시는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본관리에서 장래 자본 수준 및 확충 계획 관련 질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한다 (〈표 IV-5〉 참조).

### 나. 내부모형

감독당국 및 외부이용자는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에 대해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표준모형 또는 (부분 또는 완전) 내부모형에 의한 요구자본 계상 시 사용한 기준

들을 감독당국 또는 시장참여자에게 보고 또는 공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구축·이행·운영에 적용한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 내부모형의 설계 및 운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부모형에 대한 정보는 경쟁 회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 정보와 같이 이를 기밀로 유지하고자 한다. 솔벤시 II는 이를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미공시 사실, 그리고 미공시 이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완전 또는 부분 내부모형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계상관련 정량적과 정성적, 서식형과 서술형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를 고려하여 내부모형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공시 요건과 보고 요건을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 1) 내부모형 공시 요건

### 가) 내부모형 질적 정보 공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질적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 위원회 명칭,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리스크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설계 및 응용
  - 설정된 리스크 허용 한도
  - 관리자에 위임된 리스크 허용 한도 프로세스

- 리스크 허용 한도 대비 실제 리스크에 대한 관찰 프로세스
- 내부모형 운영의 지속적 적절성을 보증하고, 리스크 프로파일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반영하는 프로세스
- 내부모형의 변경을 수용하는 프로세스
- 보고기간 내 지배구조 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변화
- 내부모형 활용(Use)
  - 지배구조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에서의 내부모형 활용
  - 경제적, 감독적 자본 평가 및 자본배분 절차
  - 내부 리스크 및 지급여력 평가에서의 내부모형 활용
- 범위 및 모형 적용 대상
  - 적용대상 리스크 및 경영 부문
  - 감독요구자본의 양적 공시 관련 리스크 범주, 파산, 그리고 하부 리스크의 개념
  - 그룹 내부모형에 포함된 회사
  - 모형 설계
  -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간 차이(범위, 적용대상 및 설계)
- 리스크 측정수단, 신뢰수준, 평가기간 및 기본자본
  - 표준모형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사용된 리스크 측정수단, 신뢰수준 및 평가기간
  - 기본자본의 개념과 지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 개념과의 차이
  - 표준모형과 다른 모형인 경우 감독요구자본 계상 시 사용한 리스크 측정수단, 신뢰수준 및 평가기간에 대한 정당성
- 방법(제 가정 및 결합방법 포함)
  - 중요 리스크 모형화의 방법 및 제 가정
  - 리스크 범주 간 결합
  - 표준모형 결과와 부분내부모형 결과의 통합
  - 외부모형의 활용 및 선택 이유

- 데이터
  - 데이터의 질 관련 점검절차
  - 내부모형 관련 주요 데이터
  - 내부데이터 사용 현황 또는 외부데이터 사용 현황
  - 외부데이터의 사용 이유 및 선택 이유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타당성
- 리스크 경감 활동
  - 리스크 경감 방법 또는 금융상품
  - 리스크 경감 방법의 사용에 따른 리스크
  - 장래배당의 축소 관련 적절성
  - 경영행위
  - 리스크 경감 실행, 리스크 경감 전략 및 방법, 효과의 지속성 등 관련 관찰 절차
- 운영성과
  - IT인프라 및 보안, 비상계획 및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정보
- 검증 행위
  - 검증 관련 지배구조
  - 검증 목적 · 범위 · 방법
  - 검증 절차 실행 회수
  - 검증 한계
  - 독립적 검토 실시
  - 실시한 내부·외부 검증작업 개관
  - 검증결과 관련 한계 등
- 문서화
  - 문서화 지배구조
  - 적시 문서 수정 원칙 및 문서 수정 현황

## 나) 내부모형 양적 정보 공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양적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모형에 따른 총 요구자본 규모 및 리스크 범주별 요구자본 규모  
(표준모형의 신뢰수준 및 평가기준 적용)
-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에 동일한 신뢰수준 적용
-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은 하부 리스크별로 구분하여 표시
  -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부동산리스크, 외환리스크,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및 기타리스크에 동일한 신뢰수준 적용
- 보험리스크 요구자본은 하부리스크별로 구분하여 표시
  - 손해보험리스크, 생명보험리스크 및 건강보험리스크에 동일한 신뢰기준 적용
- 리스크 범주 및 하부리스크에 신뢰수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 분산효과는 표준모형의 신뢰수준 및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측정한 완전 분산 요구자본과 리스크별 요구자본을 합산한 값과의 차이로 표시
- 그룹분산효과는 표준모형의 신뢰수준 및 평가기간을 기준하여 그룹 내 거래를 감안한 그룹 내 모든 회사의 요구자본을 합산한 값과 분산된 그룹 전체 요구자본의 차이로 표시
- 비교 및 조정
  - 직전 연도 실적과의 비교, 주요 변화요인, 리스크 범주 및 분산효과
  - 내부모형에 적용된 기본자본 개념이 표준모형과 다른 경우 기본자본 간 조정
- 검증 분석
  - 중요 리스크에 대한 양적 검증 결과
  - 중요 리스크 및 사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

### 다) 추가 공시<sup>51)</sup>

보험회사는 내부모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공시하여야 한다.

- 비례원칙 결과
- 부분 내부모형 결과, 표준모형과의 통합
- 내부모형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
- 내부모형 승인 조건 및 이행계획에 관한 정보
- 심리중인 중요 모형 변화 승인에 대한 정보
- 내부모형 요건 위반에 대한 정보
- 자본 확충에 대한 정보 및 감독당국의 정당성에 대한 정보
- 내부 자본적정성 관련 내부모형과 요구자본 관련 내부모형 간 차이에 대한 정보

## 2) 내부모형 보고 요건

### 가) 내부모형 질적 정보 보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질적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내부모형 요건 준수 관련 활동(외부 검토 및 감사 시 발견사항 포함)
- 직전연도 결과와의 비교 및 변화 이유
- 손익의 원인 및 원천
-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내부모형 요구자본 계상 간 가정 차이
- 내부모형 개선 계획
- 리스크 감내 한도, 비즈니스 전략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니즈 정보
- 경제적 자본과 요구자본 간 조정
  - (다른 평가기간 또는 리스크 측정방법을 사용한 경우)
- 자본배분 방법(요구자본 또는 경제적 자본)

51) 감독당국은 특정 시기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요구자본 계상 관련 장래 경영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

### 나) 내부모형 양적 정보 보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양적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내부모형에 의한 요구자본 추정치
- 표준모형에 의한 요구자본 추정치(가능한 경우)
- 책임준비금 및 이연법인세 자산의 손실 흡수 능력을 반영한 요구자본 추정치와 반영하지 않은 요구자본 추정치
- 자본 확충
- 내부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 추정치
- 직전 회계연도 결과와의 비교 및 조정
- 요구자본 및 경제적 자본에 대한 예측치
- 당 회계연도 내 모형적합성 검증 결과  
(예: 사후검증, 위기상황 분석 및 민감도 분석)

### 3) 내부모형 공시 및 보고 요건 특징

솔벤시 II는 정기보고 및 정기공시 모두 내부모형의 질적 정보 및 양적 정보를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정기보고는 감독당국의 점검에서 요구되어지는 내부모형 관련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하나, 정기공시는 시장참여자의 재무적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모형 관련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한다.

이 차이는 내부모형의 질적 정보 및 양적 정보에 대한 서술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기보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요건 준수 행위, 직전 연도와 비교·조정, 손익 설명, 리스크 프로파일과 내부모형 간 가정 차이, 개선

계획, 자본 조정, 자본 배분, 장래경영행위 등에 대한 내부모형의 질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요구자본, 표준모형 요구자본 추정치, 책임준비금 및 이연법인세의 손실흡수능력, 자본확충, 직전 연도와 비교·조정 등에 대한 내부모형의 양적 정보를 서술하여야 한다.

〈표 IV-8〉 내부모형 관련 공시 요건 및 보고 요건 비교

항목	보고 요건	공시 요건
내부모형 질적 정보	요건 준수 행위, 직전연도와 비교·조정, 손익 설명, 리스크 프로파일과 내부모형 간 가정 차이, 개선계획, 자본 조정, 자본배분, 장래경영 행위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활용, 범위 및 적용대상, 리스크 측정 수단/신뢰수준/평가기간/기본자본, 계상방법(제 가정 및 결합방법 포함), 데이터의 질, 리스크 경감행위, 운영 성과, 검증행위, 문서화
내부모형 양적 정보	내부모형 요구자본, 표준모형 요구자본 추정치, 책임준비금 및 이연 법인세의 손실흡수능력, 자본 확충, 직전연도와의 비교·조정	요구자본, 직전연도와의 비교 및 조정, 검증 분석

#### 4. 양적 양식(quantitative templates)

솔벤시 II는 보험회사가 재무상태표, 경영활동, 가용자본, 요구자본, 자산, 책임준비금, 재보험 등에 대한 모든 양적 양식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보험회사가 정기보고의 양적 보고 양식 중 일부 양식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 보험료·보험금·비용, 가용자본, 총요구자본, 최저요구자본 및 책임준비금 등과 관련된 양식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솔벤시 II는 국가 간 및 회사 간 비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에 양적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양적 양식을 설계하였다. 솔벤시 II는 양적 양식에 대해 보험회사가 연 1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

한 재무 및 지급여력 정보(예: 요구자본, 책임준비금, 보험료 및 보험금, 가용자본 등) 관련 양적 양식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보고 및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IV-9〉 양적 보고 양식과 양적 공시 양식의 비교

구분	양적 보고 양식	양적 공시 양식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부외거래, 통화별 자산·부채	대차대조표(연)	
경영실적	지역별 활동, 보험료·보험금·비용(연·분기)	보험료·보험금·비용(분기)	
가용자본	가용자본(연 또는 분기)	가용자본(분기)	
가용자본 변동 분석	투자·책임준비금·기타부채에 따른 자기자본 변동분석	-	
요구자본	SCR	총 요구자본(연), 리스크별 요구자본(연)	총 요구자본(연)
	MCR	최저요구자본(연 또는 분기)	최저요구자본(연)
자산	투자포트폴리오 현황(연 또는 분기), 구조화 상품 현황·파생상품 포지션·투자자산별 수익·투자펀드·대차거래·담보자산(연)	공시 없음	
책임준비금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연 또는 분기), 장래현금흐름·보험부채 분석·변액연금의 상품별 보증, 변액연금의 보증 헤지(연)	책임준비금(분기)	
재보험	임의재보험, 차기 연도 재보험, 재보험자의 지분, 특수목적보험기구(SPIV)	-	

한편, 솔벤시 II의 양적 양식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월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경영통일공시와 관련된 양적 양식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의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의 계량평가관련 요건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다.<sup>52)</sup>

52)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의 평가 항목은 〈부록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V. 요약 및 시사점

---

### 1. 요약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솔벤시 II의 한 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솔벤시 II의 보고제도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점검(supervisory review process)과 관련된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솔벤시 II의 공시제도는 보험회사가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외부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솔벤시 II에서 1층(양적 감독) 및 2층(질적 감독)을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솔벤시 II에서 감독당국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자산 및 부채(책임준비금 포함), 요구자본, 가용자본 및 투자 등의 양적 요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리스크관리(ORSA 포함), 임원의 적격성, 아웃소싱, 내부통제, 내부감사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한 질적 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이러한 점검에 앞서 보험회사의 보고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EIOPA는 이러한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는 보고제도에 대해 보고의 질 강화, 규제차익 및 처리 불균형의 회피 등을 검토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고제도에 대한 지침, 위임기준 권고안,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솔벤시 II에서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성과, 재무적 리스크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규율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정보중개기관(예: 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의 변화 요인 측정 및 회사 등급의 결정 등을 통해 보험회사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을 행사한다. EIOPA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공시제도에 대해 공정한 경쟁 기회 및 시장규율 강화를 검토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시제도에 대한 지침, 위임기준 권고안,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제도와 충실한 공시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고 있다.

EIOPA의 위임기준 권고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이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아야 하는 정보에 대한 구조와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EIOPA의 위임기준 권고안은 시장참가자들이 보험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 재무실적 및 회계정책의 분석, 미래예측과 가치평가 실시 등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의 구조와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솔벤시 II는 공시제도를 보고제도와 함께 감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BIS(바젤 II)와 달리 보고제도도 공시제도 모두를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솔벤시 II가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로서 모든 감독 수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솔벤시 II는 보험감독체계 내에서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솔벤시 II의 3층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BIS(바젤 II)의 경우 솔벤시 II와 달리 공시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BIS의 『은행 투명성 강화』(1999)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공시제도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을 권고하고 있지만,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게 포괄적인 감독보고제도의 확립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은행감독당국들은 보고제도에 대한 모든 요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고제도와 공시제도 모두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업무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솔벤시 II는 다른 부문과 달리 보고 및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규칙 중심 감독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솔벤시 II는 1층 및 2층에서 양적 요건, 리스크관리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3층인 보고 및 공시 제도에서도 이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II는 지침에서 보고 및 공시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솔벤시 II는 중요성과 비례성과 더불어 적시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접근성, 포괄성 등을 보고 및 공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2012) 및 바젤위원회(1998)의 공시원칙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공시 원칙과 비교하면 솔벤시 II의 공시 원칙은 우리나라의 공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시 원칙은 완전성, 적정성, 이해가능성, 객관성, 공정경쟁성, 목적적합성 등이다.<sup>53)</sup>

53)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일반원칙) 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지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이 차이는 국제적 정합성보다는 다른 금융권과의 일관성을 지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솔벤시 II가 이와 같이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제도와 공시제도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또는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보고 및 공시의 구조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II의 정기보고와 정기공시는 동일한 구조와 항목을 이루어져 있고, 정보이용자와 정보이용 목적의 차이를 반영하여 보고 요건과 공시 요건을 다르게 권고하고 있다. 먼저 정기보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최소한 3년마다 감독 당국의 점검 및 재무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술하여야 하며,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매년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경영 계획 기간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며, 감독목적에만 부합하는 항목(예: 경영성과 중 목적 및 전략)을 추가로 서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기공시의 경우 보험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중요한 변화를 서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경영진의 목표와 달성전략, 기업에게 가장 유의적인 자원·위험·관계, 영업과 전망의 결과, 명시된 목표와 비교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용하는 중요한 성과 측정치와 지표 등을 서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원보고와 유사하게 요약하여야 한다.

이렇듯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위임기준(안)과 가이드라인(안)은 보고 및 공시의 구조와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IOPA는 이를 통해 유럽 내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이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보험회사들은 보고제도와 공시제도 특히, 양적 보고 서식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sup>54)</sup>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4) Deloitte(2011)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솔벤시 II의 자본관리 및 양적 보고 서식이 현행 제도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KPMG(2011)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양적 양식(분기), 양적 양식(연), 정기보고, 정기공시 및 그룹 보고의 순서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양적 양식(분기) 및 양적 양식(연)을 이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불완전성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솔벤시 II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시제도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보험경영통일공시지침 등에서 공시 구조 및 공시 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고제도는 결산지침,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 내용, 업무보고서의 서식 등에서 보고 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업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보고의 구조 및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 항목만 열거하고 구조 및 서술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에게 자율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 특히 위험평가와 관련한 보고에 대해서는 솔벤시 II의 3층보다는 솔벤시 II의 2층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셋째, 솔벤시 II는 “모범사례 전략(best practice)”을 적용하여 공시 요건을 보다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새롭게 도입한 ORSA 및 내부모형과 관련된 내용, 요구자본 산출 변경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솔벤시 II는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보고 항목 및 공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II는 재무회계기준에서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경영진설명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및 공시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이 경영진설명서는 IASB가 독일의 “경영진보고서”, 영국의 “영업과 재무검토”, 미국의 “경영진 논의와 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고, IASB는 이에 대한 공시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솔벤시 II는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운영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 ALM 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장래 자본 수준 및 확충 계획, 자본 포지션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솔벤시 II의 공시 수준은 보험회사의 평균적인 공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솔벤시 II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은 제도(예: ORSA 및 내부모형)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요건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의 경영진설명서과 관련한 보고 및 공시 요건도 권고하고 있다.

## 2. 시사점

솔벤시 II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모두를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솔벤시 II는 이 두 제도를 위해 공시 및 보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보고 및 공시의 구조 및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권고하여 회사 간 회원국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솔벤시 II는 공시 및 보고 요건의 수준을 현행 보다 높게 설정하여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솔벤시 II의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먼저 감독당국은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 중심 감독 하에서도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의 구조 및 요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솔벤시 II는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측면에서 1층(양적 요건) 및 2층(질적 요건)에 대한 원칙들을 회원국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솔벤시 II는 3층(보고 및 공시)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또는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칙 중심 감독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제도와 공시제도의 구조 및 요건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설계하였다. 솔벤시 II는 이를 통해 각국 감독당국 및 보험

회사들이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국 감독당국이 보다 쉽게 회원국 간 또는 회사 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보다 쉽게 통합하도록 하여 보고 및 공시 부담에서 덜어주게 된다. 더 나아가 이는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경영진과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처럼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서 종합적, 체계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우선적으로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모범규준 또는 해설서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처럼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동일한 구조 및 제도의 목적을 반영한 차별화된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공시 수준을 상장회사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적 및 질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고, 일부 보험회사(예: 상장회사)는 기업공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적 및 질적 정보도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회사는 기업공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단의견서”와 관련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의견서는 IASB의 경영진설명서와 유사하다. IASB에 따르면 최근 공표한 재무회계기준 실무서를 통해 상장회사에게 경영진설명서를 공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실무서에 따르면 IASB의 경영진설명서는 독일의 “경영진보고서” 및 영국의 “영업과 재무검토” 등을 토대로 하여 마련되었으며, 경영진설명서에 대한 공시 여부는 상장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다. 그 결과, 상장여부에 따라 회사 간 공시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는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경영진단의견서 관련 항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회사 간 보고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는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솔벤시 II는 모범사례 전략을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솔벤시 II는 보험회사에게 현행보다 높은 보고 및 공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솔벤시 II는 IASB의 경영진설명서와 관련된 항목을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독일 및 영국에서는 상장회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솔벤시 II의 이러한 전략은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전략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솔벤시 II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경영진과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금융위기에서 제기된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과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칙 중심 감독과 상시 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솔벤시 II처럼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경영진과 투자자 간 및 경영진과 감독당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솔벤시 II와 유사하게 보험회사의 보고 수준 및 공시 수준을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기업공시기준

의 경영진단의견서와 관련한 항목들을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이 과정에서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은 미공시 관련 공시방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여 시장규율의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솔벤시 II는 감독당국의 승인 하에 기밀사항을 공시하지 않되 미공시 사실과 미공시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정보들은 외부이용자에 의한 시장감시 및 영향력 행사에 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 행위는 보험회사와 시장참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공시제도의 목적인 시장규율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솔벤시 II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에게 미공시 사실과 미공시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솔벤시 II는 이를 통해 기밀유지의 필요성과 시장규율 기능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솔벤시 II처럼 경쟁을 저해하는 정보인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이를 공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 공시제도는 솔벤시 II와 달리 미공시 사실과 미공시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와 외부이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공시제도의 목적인 시장규율 기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의 미공시 관련 접근법을 현행 공시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와 같은 수준으로 기밀유지의 필요성과 시장규율 기능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한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정, 그리고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솔벤시 II는 2009년에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지침에 따라 2012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유럽 기구들은 금융위기 등의 영향을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에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기구들은 솔벤시 II 지침에 따라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 EIOPA에 따르면 솔벤시 II의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2013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IOPA는 솔벤시 II의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최종 확정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 솔벤시 II의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정합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솔벤시 II의 위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모범사례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솔벤시 II의 공시제도를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 감독 및 리스크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ORSA 및 내부모형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제도를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병호(2003), 『금융기관론』, 제14개정판, 박영사.
- 금융감독원(2006), 『알기 쉬운 신BIS, 신BIS자료 제 2편』.
- \_\_\_\_\_ (2009a), 『금융감독개론』.
- \_\_\_\_\_ (2009b),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 \_\_\_\_\_ (2010), 『기업공시 실무안내』.
- \_\_\_\_\_ (2011a), 『금융감독개론』.
- \_\_\_\_\_ (2011b),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해설서』.
- \_\_\_\_\_ (2011c),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 해설서』.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11), 『보험회계해설서』.
- 김권중·김문철(2007),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제3판, 창민사.
- 김정렬(2004),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규율」, 『KDIC 금융연구』, 제5권 제3호.
- 류건식·이경희(2006),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2006-4, 보험개발원.
- 보험개발원(2004),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EU 솔벤시 II를 중심으로』, CEO 리포트, CR 2004-08.
- 생명보험협회(2007), 『구미각국의 생명보험사업 대한 감독규제 I』.
- \_\_\_\_\_ (2011a), 「경영공시 작성지침」.
- \_\_\_\_\_ (2011b),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 심영(2006),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제도」, 한국증권법학회 제118회 정기세미나.
- 유진아(2011), 「이용자 중심 경영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KiRi Weekly 제 147호, 보험연구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1), 「시스템 관점에서 본 금융규제 변화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차 제안세미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07),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_\_\_\_\_(2010a),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_\_\_\_\_(2010b),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_\_\_\_\_(2011),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1998), “Enhancing bank transparency”.

\_\_\_\_\_(2004), “Financial disclosure in the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ectors: issues and analysis”.

\_\_\_\_\_(2006),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Comprehensive Version”.

\_\_\_\_\_(2009), “Enhancements to the Basel II framework”.

\_\_\_\_\_(2011a), “Consultative document: definition of 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

\_\_\_\_\_(2011b), “Pillar 3 disclosure requirement for remuneration”.

BCBS · CGFS · IAIS · IOSC(2001), “Multidiscipline working group on enhanced disclosure”.

CEIOPS(Committee of the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Supervisors, 2006), “Draft Advice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in the Framework of the Solvency II Project”, *Consultation Papers* No.15, CEIOPS-CP-08/06.

\_\_\_\_\_(2007a), “Advice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in the Framework of the Solvency II Project”, CEIOPS-DOC-03/07.

\_\_\_\_\_(2007b), “Policy on harmonisation of contents and formats for public disclosure and supervisory reporting”, *Issue Paper*, CEIOPS-IGSRR-05/07.

- \_\_\_\_\_ (2008), “Supervisory Review Process and Undertakings’ Reporting Requirements”, *Issues Paper*, CEIOPS-IGSRR-18 /08.
- \_\_\_\_\_ (2009), “CEIOPS's Advice for Level 2 Implementing Measure on Solvency II: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s”, CEIOPS-DOC-50/09
- CRO Forum(2008), “Public risk disclosure under Solvency II: principles, content outline and sample report”.
- Deloitte(2009), “Solvency II reporting: Public disclosure and supervisory reporting in the new world” .
- \_\_\_\_\_ (2011), “Solvency II reporting and disclosure: Introduction to the new world of regulatory reporting for insurers” .
- EC(European Commission, 2003), “Nine months left to deliver the FSAP”, Financial Services, eighth report.
-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2011a), “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al on quantitative reporting templates”, EIOPA-CP-11/009b.
- \_\_\_\_\_ (2011b), “Consultation paper on the draft proposal for Guidelines on Narrative Public Disclosure & Supervisory Reporting, Predefined Events and Process for Reporting & Disclosure”, EIOPA-CP-11/009f.
- \_\_\_\_\_ (2012), “EIOPA Final Report on Public Consultations No.11/009 and 11/011 on the Proposal for the 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 EIOPA-260-2012.
-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2008),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002), “Guideline paper on public disclosure by Insurers”, Guideline Paper No.4.
- \_\_\_\_\_ (2004), “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technical risks and performance

- for non-life Insurers and reinsurers”, Supervisory Standard No.9.
- \_\_\_(2005), “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investment risks and performance for Insurers and reinsurers”, Supervisory Standard No.11.
- \_\_\_(2006), “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technical risks and performance for life Insurers”, Standard No.12.
- \_\_\_(2011), “Insurance core principles, standards, guidance and assessment methodology”.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5), “Management Commentary”, *Discussion Paper*.
- \_\_\_(2009), “Management Commentary”, *Exposure Draft ED/2009/6*.
- \_\_\_(2010), “Management Commentary: A framework for presentation”, *IFRS Practice Statement*.
- KPMG(2008), “Financial Institution Risk Disclosure Best Practice Survey 2008”.
- \_\_\_(2011), “Pillar 3 Survey Results”.
- MAZARS(2011), “Solvency II - Pillar e: The final call?”
- Mikhail Frolov(2007), “Why do we need mandated rules of public disclosure for banks?”, *Journal of Banking Regulation*, Vol.8, 177~191.
- Patrick M. Liedtke and Jan Monkiewicz(2011), “The future of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UK: palgrave macmillan.
- Simone Brathwaite(2010), “International Regulatory Developments: An Introduction to Solvency II”.
- Towers Watson(2011), “Insights: Financial and Regulatory Reporting: Five Stages of Evolution-The Critical Role of Financial Models”.
- UK ASB(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6), “REPORTING STATEMENT: 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 UK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11), “Transposition of Solvency II : Part 1”, *Consultation Paper*, CP11/22.

損保ジャパン総合研究所(2008), 「金融と保険の融合の進展」.

국제결제은행(<http://www.bis.org>)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http://www.iaisweb.org>)

뮌헨재보험회사(<http://munichre.com>)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http://www.naic.org>)

영국금융감독청(<http://www.fsa.gov.uk>)

유럽보험연금감독청(<http://eiopa.europa.eu>)

EUR-Lex (<http://eur-lex.europa.eu>)

---

# 부 록 I : 보험회사 보고 및 공시

---

## I. 보험회사 보고제도

### 1. 근거

- 보험업법 제118조는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및 사업보고서,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6-7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기금의 상각 및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6-7조 및 제6-8조는 결산지침,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 내용,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사업보고서

- 사업보고서의 서식: 보험회사의 자율적 결정
- 사업보고서의 내용
  - 사업의 개황
    - 인·허가 받은 영업의 종류 및 인·허가일자
    - 당기의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실적 등
  - 기초서류 등의 변경사항

- 정관 및 기초서류의 변경사항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의 일자 및 주요 의결사항
- 점포 및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점포 및 모집조직에 대한 현황 및 주요변동사항
- 주주 및 사원에 관한 사항
  -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여 1% 이상 소유한 주주 및 기금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한 사원의 성명 및 소유비율
-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당해 영업연도에 있어서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포함)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기금의 각출자에 관한 사항
  - 기금각출자의 인적사항, 각출금액 등에 관한 일반사항
  - 기금각출자가 가질 권리·의무
-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내역,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적립내역, 배당금지급시기 및 배당방법 등
-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주요활동내역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출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명칭, 보유주식 수, 보유주식비율 및 출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소송 및 부도발생 등)

## 3. 업무보고서: 구조 및 보고 항목

구분	보고 항목	
1. 일반 현황	회사 일반사항, 인원 및 점포 현황, 대주주 지분 현황	
2. 재무 현황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
	주요 재무 현황	총괄 재산이용명세표, 특별계정 재산이용명세표, 자금차입 현황, 후순위자금 공여 현황 등
	자본적정성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무액 등 명세, 위험기준 지급여력 비율,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금리위험액 익스포져 및 금리민감도, 금리위험액 보험부채 익스포져, 금리위험액 보험부채 익스포져,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등
	자산건전성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 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대출채권 부문별 연체 현황 등
	수익성	유가증권손익현황, 영업이익률,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운용자산이익률, 상품별 손익 명세표, 신탁계정수지 현황
	유동성	수지차 비율, 유동성 비율
	보험영업 현황	보험료수입 현황, 보험/투자계약성적표, 보험금 현황, 사업비 현황, 재산관리비 현황 등
	재보험거래 현황	재보험거래 주요지표 요약, 재보험 수지차 현황, 재보험 손익 현황, 계열보험사와 재보험 출수재 현황 등
	파생상품거래 현황	파생금융상품 현황,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 현황
리스크평가	위험평가 계량평가항목 총괄, 위험평가 유동성리스크 비율, 위험평가 자본적정성 관련 등	
3. 업무규제 준수 현황	자산운용비율, 부동산 운용 현황, 외국환, 외국부동산 소유 현황, 파생상품거래 현황, 거래신용공여 현황, 자산운용 예외승인 및 자산운용제한 예외적용 현황 등	
4. 권역별 현황	설계사정착율, 계약유지율, 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산성 및 소득분포 등	
5. 내부통제	임원 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II. 공시제도

### 1. 근거

■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영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는 공시의 내용과 범위,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음.

#### ○ 공시의 내용 및 범위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 67조)
- 조직 및 인력사항, 경영지표(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경영방침 등 보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감독규정 제7-44조)
- 구체적 내용은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 작성지침』에서 규정: 요약,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지표, 위험관리, 기타 경영 현황, 재무제표, 기타 등을 공시

○ 경영공시는 결산시기에 따른 정기공시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는 수시공시로 구분

- 결산에 따른 경영공시인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기별 임시결산인 경우 임시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감독규정 제7-44조)
- 수시 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시행령 제67조)

- 보험회사는 수시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보고
- 보험회사는 공시자료를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와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

## 2. 정기공시

### 가. 구조 및 주요 항목

구조	항목
요약	주요 경영 현황 요약
일반 현황	선언문, 경영방침, 연혁·추이, 조직, 임직원 현황, 모집조직 현황, 자회사, 자본금,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계약자배당, 주주배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경영실적	경영실적 개요, 손익발생원천별 실적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상황 개요, 대출금운용,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부동산 보유 현황, 보험계약준비금 적립, 외화자산·부채, 부실대출 현황, 보험계약 현황, 재보험 현황
경영지표	자본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지표, 수익성지표, 유동성지표, 신용평가등급
위험관리	위험관리개요, 보험위험관리, 금리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시장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기타 경영 현황	자회사 경영실적,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내부통제, 기관경고 및 임원문책사항, 임직원 대출잔액, 사외이사 등에 대한 대출 및 기타거래 내역, 민원발생현황,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사항
기타	임원 현황, 이용자편람

주: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달리 신탁 부문과 관련하여 조직 및 인력 현황, 재무 및 손익 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신탁상품 평균배당을 현황 및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함.

## 나. 주요 항목별 공시 요건

### 1) 일반 현황

항목	내용
선언문	경영공시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장하는 선언문 (경영진 서명 첨부)
경영방침	경영이념, 경영방침, 경영자세, 경영비전 공시
연혁·추이	각사의 연혁추이를 알기 쉽게 소개
조직 1) 조직도 2) 영업조직	조직도를 포함하여 조직전체의 개요를 공시 국내외지점, 영업소, 사무소의 수를 공시
임직원 현황	임직원 수 공시
모집조직 현황	보험설계사 수, 대리점 수 등 공시
자회사 1) 연결대상 자회사 2) 비연결 자회사	국내 및 국외의 연결대상 자회사와 비연결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 명, 소재지, 주요업무, 설립 또는 출자년월일, 자본금, 소유주식수, 소유비율을 공시
자본금	자본금의 변동 추이를 공시
대주주	지분을 1% 이상 대주주의 주주명, 소유주식 수, 소유비율 공시
주식소유 현황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개인 등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주주 수, 소유주식 수 및 그 비율을 공시
계약자배당	계약자배당액 및 배당률을 상품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시
주주배당	배당률, 주당 배당액, 주당 순이익, 배당성향에 대하여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취소내용 공시

### 2) 경영실적

항목	내용
경영실적 개요	각사의 당기순손익 내용 및 전년도 주요 변동요인
손익발생원천별 실적	당기순손익이 산출되기까지의 각 항목을 보험영업손익, 투자영업 손익, 기타손익, 특별계정손익 등 손익발생원천별로 수익·비용내 용 및 주요변동요인 등

## 3) 재무에 관한 사항

항목	내용
재무상황 개요 1) 일반계정	총자산·부채 및 자본 현황, 주요 구성항목의 규모 및 구성비 등의 변동 내용
2) 특별계정	총자산·부채 및 자본 현황, 주요 구성항목의 규모 및 구성비 등의 변동 내용
3) 기타사항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대출금운용	대출금 운용방침 및 담보별, 업종별, 용도별 대출 현황, 전년 대비 변동 및 변동 요인
유가증권투자 평가손익	유가증권의 투자 및 시가 현황, 평가손익 현황
부동산 보유 현황	부동산 종류별 현황, 전년 대비 변동
보험계약준비금 적립	보험계약준비금 등 적립, 환입내용 및 전년도 대비 변동
외화자산·부채	외화자산부채 형태별 현황, 국가별 운용비율, 전년 대비 변동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당기 중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전년 대비 변동
부실대출 현황	부실대출 및 거액부실대출 현황, 신규발생 법정관리업체, 화의 결정업체 및 워크아웃 업체의 대출 현황 및 전년 대비 변동
보험계약 현황	보험의 종류별 계약 현황,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구분
재보험 현황	국내외 출수재 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 공시

## 4) 경영지표

항목	내용
자본의 적정성	자기자본, 지급여력비율내용 및 산출방법,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요 변동 내용 등
자산건전성지표	부실자산비율 및 위험가중자산비율 현황과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 내용
수익성지표	손해율, 사업비율, 운용자산이익률, ROA, ROE 현황과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 내용
유동성지표	유동성비율 및 현금수지차비율 현황,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생산성지표	모집조직당 원수보험료 실적과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 내용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회사별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성격,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 변동사항

5) 위험관리

항목	내용
위험관리 개요	위험관리조직, 관리체계의 개요 위험의 개념, 관리방법 및 내용
보험위험 관리	
금리위험 관리	
신용위험 관리	
시장위험 관리	
유동성위험 관리	
운영위험 관리	

6) 기타 경영 현황

항목	내용
자회사 경영실적	자회사의 재무상황 및 손익상황, 자회사에 대한 대출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 변동 내용
금융기관 거래내역	다른 보험회사, 다른 금융기관(은행(한국은행 포함)) 등과의 거래 잔액 및 조건
내부통제	내부통제절차, 내부통제기관에 의한 통제 현황
기관경고·임원문책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경고 및 임원문책 사항
임직원대출 잔액	임·직원에 대한 대출잔액
사외이사 등 대출 및 기타거래 내역	사외이사 등에 대한 대출 및 기타 주요거래 내역,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용
민원발생 현황	2기 이상 민원발생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주요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7) 재무제표

항목	내용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본문 및 특기사항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2기 이상 공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사항	당해 연도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사항 중 주요 내용

### 3. 수시공시

-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 제14조에 의한 조치로 정부의 출자를 받은 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금융사고 발생으로 보험회사의 직전분기 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분기 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현재 지급여력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 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보험업법 제111조제3항 관련 사항으로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됨.
  -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공시 사유	수시 공시 내용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자 또는 주식의 소각(자본감소·이익소각)의 결정</li> <li>•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li> <li>•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관련 결정</li> <li>•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단기차입관련 결정</li> <li>• 모집이외의 방식으로 자기자본의 10% 이상 단기사채 발행 결정</li> </ul>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 부과내용</li> <li>• 소송의 제기 및 확정</li> <li>•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자회사가 변경된 때</li> <li>•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li> </ul>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 이상의 손해 발생</li> </ul>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에 해산사유 등 발생</li> </ul>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li> <li>•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li> </ul>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업연도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의 직전사업연도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발생</li> </ul>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li> <li>• 사외이사나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li> <l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li> <li>•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li> <li>•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li> <li>• 영업양도·양수·임대, 합병,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li> <li>•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li> <li>•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li> </ul>

### Ⅲ. 기타(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평가)

#### 1.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부문별 평가항목<sup>55)</sup>

##### 가. 생명보험

종합 평가 부문	계량 평가 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 여력	지급 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 I</li> <li>• 지급여력 비율 I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li> <li>•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li> <li>•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li> </ul>
자산 건전성	자산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자산 비율</li> <li>• 위험가중자산 비율</li> <li>• 대손충당금 적립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li> <li>•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li> <li>• 부실자산 관리능력</li> <li>• 여신관리의 적정성</li> <li>•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li> </ul>
경영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li> <li>• 경영정책 수립 · 집행기능의 적정성</li> <li>•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li> <li>• 법규준수: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 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li> <li>• 재보험업무의 적정성</li> </ul>
수익성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자산이익률</li> <li>•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li> <li>• 영업이익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li> <li>• 손익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li> <li>•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li> </ul>
유동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비율</li> <li>• 수지차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li> <li>• 유동성 관리능력</li> </ul>

주: 계량평가항목 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함.

55)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함. 검사 외의 기간 중에는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손해보험

종합 평가 부문	계량 평가 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 여력	지급 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 I</li> <li>• 지급여력 비율 I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li> <li>•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li> <li>•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li> </ul>
자산 건전성	자 산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자산 비율</li> <li>• 위험가중자산 비율</li> <li>• 대손충당금적립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li> <li>•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li> <li>• 부실자산 관리능력</li> <li>• 여신관리의 적정성</li> <li>•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li> </ul>
경영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li> <li>• 경영정책 수립 · 집행기능의 적정성</li> <li>•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 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li> <li>• 법규준수: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li> <li>• 재보험업무의 적정성</li> </ul>
수익성	수익성	<원수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손해율</li> <li>• 운용자산이익률</li> <li>• 영업이익률</li> </ul> <전업재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산 비율</li> <li>• 운용자산이익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li> <li>• 손익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li> <li>•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li> </ul>
유동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비율</li> <li>• 현금수지차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li> <li>•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li> <li>• 유동성 관리능력</li> </ul>

주: 계량평가항목 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함.

## 2. 위험평가 평가분문 및 부문별 평가항목<sup>56)</sup>

### 가. 생명보험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경영관리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li> <li>•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li> <li>• 비재무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li> <li>• 내부통제의 적정성</li> <li>• 일반관리의 적정성</li> </ul>
보험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격리스크 비율</li> <li>• 손해율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li> </ul>
금리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리스크 비율</li> <li>•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부채 종합관리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li> </ul>
투자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시장리스크 비율</li> <li>• 변액보증리스크 비율</li> <li>• 부실자산 비율</li> <li>• 대손충당금적립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li> <li>•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li> </ul>
유동성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리스크 비율</li> <li>• 유동성 비율</li> <li>• 수치차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li> </ul>
자본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Ⅰ</li> <li>• 지급여력 비율Ⅱ</li> <li>• 자기자본 지급여력 비율</li> <li>• 스트레스 지급여력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위기상황분석 포함)</li> <li>• 자본적정성의 장기적 유지 또는 개선 가능성</li> </ul>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대 수익 비율</li> <li>• 운용자산이익률</li> <li>• 영업이익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내재가치 분석 포함)</li> <li>•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li> </ul>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56) 위험평가는 분기별로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한 사항을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함. 다만, 비계량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연단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손해보험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경영관리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li> <li>•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li> <li>•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li> <li>•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li> <li>• 내부통제의 적정성</li> <li>• 일반관리의 적정성</li> </ul>
보험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격리스크 비율</li> <li>• 준비금리스크 비율</li> <li>• 손해율(원수사: 위험손해율, 전업재보사: 합산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li> </ul>
금리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리스크 비율</li> <li>•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부채 종합관리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li> </ul>
투자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시장리스크 비율</li> <li>• 부실자산 비율</li> <li>• 대손충당금적립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li> <li>•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li> </ul>
유동성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리스크 비율</li> <li>• 유동성 비율</li> <li>• 수지차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li> <li>•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li> </ul>
자본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I</li> <li>• 지급여력 비율II</li> <li>• 자기자본 지급여력 비율</li> <li>• 스트레스 지급여력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 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위기상황분석 포함)</li> <li>• 자본적정성의 장기적 유지 또는 개선 가능성</li> </ul>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대 수익 비율</li> <li>• 운용자산이익률</li> <li>• 영업이익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li> <li>•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내재가치 분석 포함)</li> <li>•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li> </ul>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

## 부 록 Ⅱ: 국제기구와 공시제도

---

### I. 바젤은행감독위원회(BIS)

#### 1. 은행 투명성 강화(1998)<sup>57)</sup>

##### ■ 공시 원칙

- 포괄성, 적정성 및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중요성

##### ■ 공시내용

-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 발생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세부 자료, 부문별 지역별 자료, 경영진에 보고된 영업 정보 등을 공시
-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 자산, 부채 및 자기자본의 유형별 세부 내역 등을 공시
- 리스크관리 전략 및 관행(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practices):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철학과 방침 및 방법론, 리스크의 발생이유 및 경위, 리스크관리 및 통제 방법, 리스크관리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여부 및 활용방법 등을 공시
- 리스크 익스포져: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생존가능성 및 궁극적인 영업지속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를 공시
- 회계방침: 공시된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된 회계방침을 공시
- 기본 업무, 경영진 및 기업지배구조 정보: 주요 업무활동, 금융회사 조직에 관한 사항(이사회 조직, 최고경영진 조직, 기본조직구조 등), 보상방침을 포함한 유인제도(경영진에 대한 보상 등) 등을 공시

---

57) BCBS(1998), pp. 17-24.

## 2. 바젤 II(2006)<sup>58)</sup>

### ■ 공시주기

-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공시. 다만 리스크 특성이 급속히 변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및 구성내용을 매 분기마다 공시

### ■ 공시항목

- 일반원칙: 공시정책, 공시의 적정성 평가절차
- 적용범위: 은행그룹 내 연결구조관련 제반사항 등
- 자본구조: 기본자본 등의 세부내역
- 자본적정성: 리스크종류별 요구자기자본 등
-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리스크 종류별 익스포져 내용, 리스크 측정방법 등

### ■ 공시내용

공시항목	공시내용
일반원칙	• 이사회 승인 공시정책, 공시의 평가, 빈도, 적정성 평가절차
적용범위	• 은행그룹 내 연결구조 관련 제반사항 • 은행그룹에 포함되는 법인기업의 범위,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의 리스크가 반영된다는 사실 • 해당법인의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법
자본구조	• 모든 자기자본조달수단의 주요 특징에 관한 요약 정보 • 기본자본의 세부항목별 금액 및 보완자본의 규모 등
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 유지 전략, 리스크별 요구자본 및 요구자본 비율 등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 리스크별 관리목적 및 관리정책(전략 및 절차, 리스크관리기능의 구조와 조직, 리스크 보고범위와 성격, 리스크측정시스템 등) - 신용리스크: 유형별 · 포트폴리오별 익스포져, 부실채권 · 대손충당금 현황, 요구자기자본, 신용리스크 경감, 자산유동화 등 - 시장리스크: 리스크 요소별 요구자기자본 및 VaR 현황 등 - 운영리스크: 측정방법론에 고려되는 요소, 산출방식 혼용범위, 리스크 경감목적의 보험 등 - 주식리스크: 보유주식 공정가액, 사용방법별 요구자기자본 등 - 금리리스크: 성격, 주요 가정, 충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감, 위기상황 분석결과 등

자료: 금융감독원(2006), p. 155.

58) BCBS(2006).

### 3. BIS의 공시관련 주요 보고서

공표일	문서명	비고(내용)
1998년	은행 투명성 강화 (Enhancing bank transparency)	공시 원칙 등
2004년	바젤 II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자본적정성, 리스크 수준 등 공시 의무화
2009년	바젤 II 강화 (Enhancements to the Basel II framework)	부외 거래 등에 대한 공시 강화
2011년	보상 공시 요건 (Pillar 3 disclosure requirement for remuneration)	보상 요건에 대한 공시 강화

## II.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1. 보고제도(2011)<sup>59)</sup>

#### ■ 보고 원칙

- 감독당국은 보험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재무·통계 보고, 시장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 감독당국은 정기적, 체계적, 종합적인 재무 및 통계 자료, 계리 보고서, 재무 보고서 등의 제출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제정
- 감독당국은 보고 및 제출 자료의 범위, 내용 및 빈도를 규정
-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더 자주, 더 상세한 추가 자료를 적시에 요청
- 감독당국은 문서화된 보고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

59) IAIS(2011), "ICP 9 Supervisory Review and Reporting".

### ■ 보고 정보

- 재무상태 및 성과에 대해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 감독목적의 회계 및 연결기준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정
-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익스포저를 보고하도록 요구
- 외부에 위탁한 기능들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
-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경사항들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

### ■ 보고정보의 정확성 요건

- 적절한 레벨의 고위 경영진으로 하여금 재무·통계 보고 및 기타 요구되는 다른 보고들의 시기 및 정확성을 책임지도록 요구
- 부정확한 재무·통계 보고의 조속한 수정을 요구
- 특정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해서는 회계 및 계리 감리를 요구
- 최소한 연차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 의견을 받도록 요구

## 2. 공시제도(2011)<sup>60)</sup>

### ■ 공시원칙(ICP 20.1)

- 외부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하며
-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시점에 최신 정보로 적시성이 있어야 하고
- 포괄적이고 유의미해야 하며
- 의사결정 기초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 동일한 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 해야 하며
- 관련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함.

60) IAIS(2011), "ICP 20 Public Disclosure".

## ■ 공시 항목 및 내용

항목	공시내용
책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준비금 관련 세부적인 계량과 비계량 정보</li> <li>• 책임준비금은 적절히 구분되어 제시</li> <li>• 미래 현금흐름 가정, 할인을 선택에 대한 설명</li> <li>• 사용된 위험조정방법 또는 책임준비금 결정방법을 설명</li> </ul>
자본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적정성에 대한 세부 정보(계량 및 비계량)</li> <li>• 자본관리 목적·정책·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li> <li>•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li> <li>• 내부모형 사용 시 내부 모형 정보</li> </ul>
재무적 도구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목적, 투자 정책과 과정, 가정 및 제 방법</li> <li>•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의 차이</li> </ul>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과 부채 관리의 적정성과 조정방식을 설명</li> <li>• 파생상품 활용의 성격 및 효과</li> <li>• 자산가치 변화 및 할인을 변화 등에 대비한 준비금 등에 관한 정보</li> </ul>
재무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및 부문별/종목별 재무성과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정보</li> <li>• 수익 원천에 대한 계량적 분석, 보험금 지급 통계, 가격 적정성, 투자수익성 등의 정량적 정보</li> </ul>
보험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의 속성·규모·복잡성</li> <li>• 재보험 및 리스크 전가 수단</li> <li>•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의 상호작용 이해</li> <li>• 리스크 집중</li> </ul>
회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속성(nature of its business), 주요 핵심 상품, 외적 영업 환경, 보험회사의 목표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li> <li>• 지배구조, 경쟁지위, 전략 및 전략변화, 민감도</li> </ul>

## 3. IAIS의 보고 및 공시관련 경과

공표일	공시	비고(주요 내용)
2002년 1월	보험회사 공시 가이드라인	정보공시의 판단기준 및 정보의 범위
2003년 10월	보험핵심원칙 및 평가방법 (보험핵심원칙 12(감독보고) 및 26(공시) 포함)	감독보고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규정
2004년 10월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실적과 리스크에 관한 공시 기준	책임준비금을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한 기준을 규정
2005년 10월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에 관한 공시기준	투자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한 원칙을 규정
2006년 10월	생명보험 실적과 생명보험리스크에 관한 공시 기준	책임준비금을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한 원칙을 규정
2006년 10월	금융재보험에 대한 리스크 전가, 공시 및 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재보험을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에 대한 원칙을 규정
2011년 10월	보험핵심원칙, 기준, 가이드라인 및 평가방법(보험핵심원칙 9(감독보고) 및 20(공시)을 포함)	정보보고 및 정보공시에 대한 원칙,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 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 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 11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 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 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 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 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 10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 12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자약력

### 장 동 식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dsjang@kiri.or.kr)

### 김 경 환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khkim@kiri.or.kr)

조사보고서 2012-3

###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KM 고려문화사

---

ISBN 978-89-5710-157-5

정가 10,000원